



목 차

CONTENTS

03	·	개요	14	·	14단지 단지배치도/조감도
04	·	지역도	16	·	14단지 동·호수 배치도
05	·	토지이용계획도	18	·	14단지 단위세대 평면도
06	·	8단지 단지배치도/조감도	21	·	세대내 마감자재 목록
08	·	8단지 동·호수 배치도	22	·	입주자 모집공고
10	·	8단지 단위세대 평면도			

개 요

GODEOK·GANGIL

단지현황

사업주체	단지	건설위치	시공업체	입주예정시기	난방방식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지구 8단지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6번지 일원	(주)대보건설	2021.02.15.	지역난방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지구 14단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28번지 일원	대우조선해양건설(주)	2021.02.15.	지역난방

주택건설현황(전용면적기준)

지구단지	총계	분양			장기전세				국민임대			
		소계	49m ²	59m ²	소계	59m ²	74m ²	84m ²	소계	29m ²	39m ²	49m ²
고덕강일지구 8단지	946	526	242	284	102	58	22	22	318	112	194	12

지구단지	총계	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			
		소계	49m ²	59m ²	소계	29m ²	39m ²	소계	17m ²	29m ²	36m ²
고덕강일지구 14단지	943	411	206	205	179	99	80	353	180	63	110

BEST LOCATION

단지교통망 | 토지이용계획도



※ 상기 위치도 및 교통망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개략도이며,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PRIDE OF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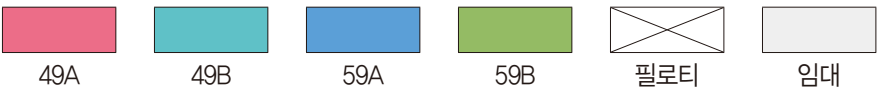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8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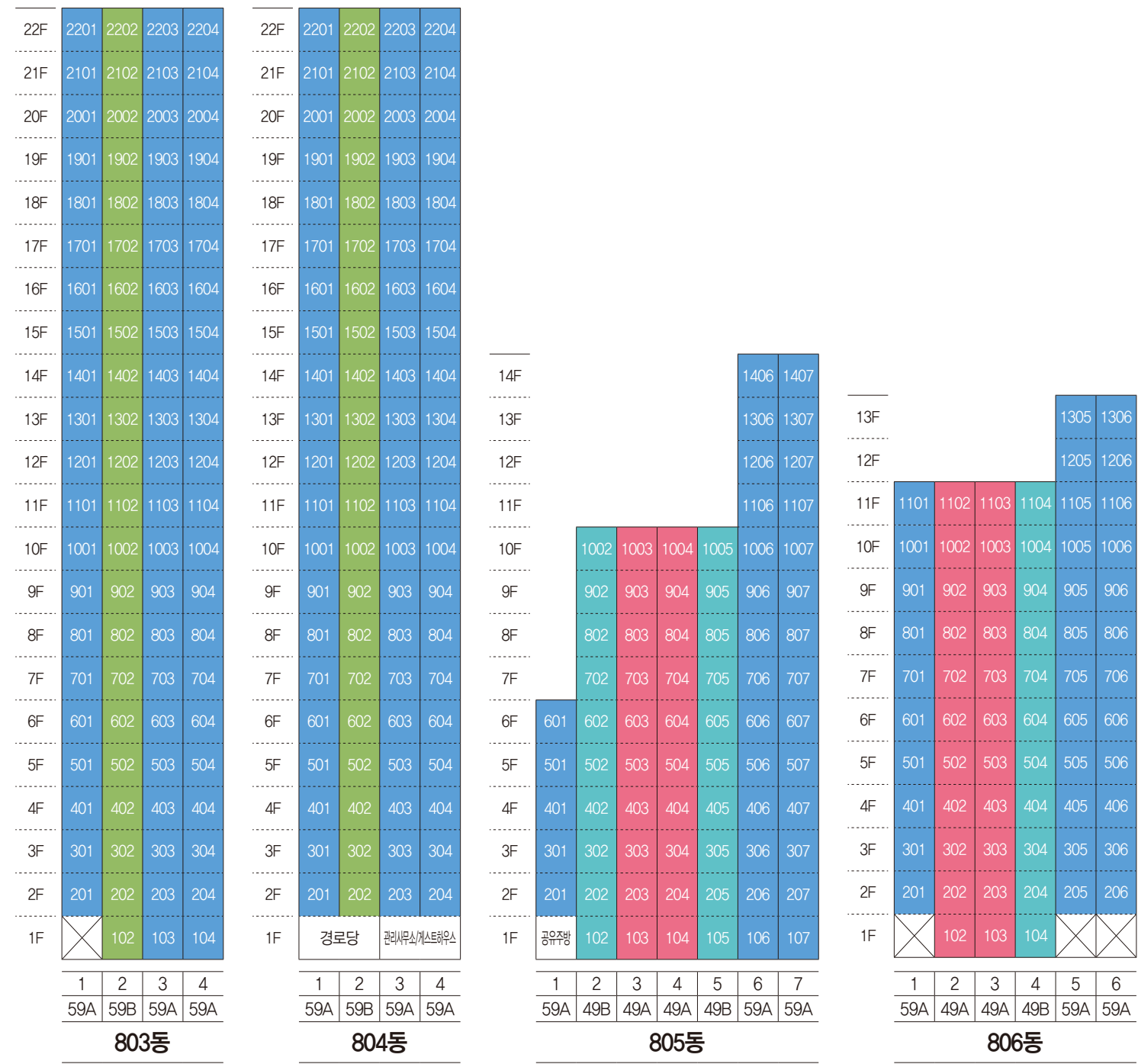


타입	49A㎡	49B㎡	59A㎡	59B㎡	합계
세대수	177	65	241	43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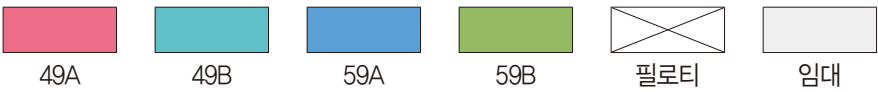
PLAN
MA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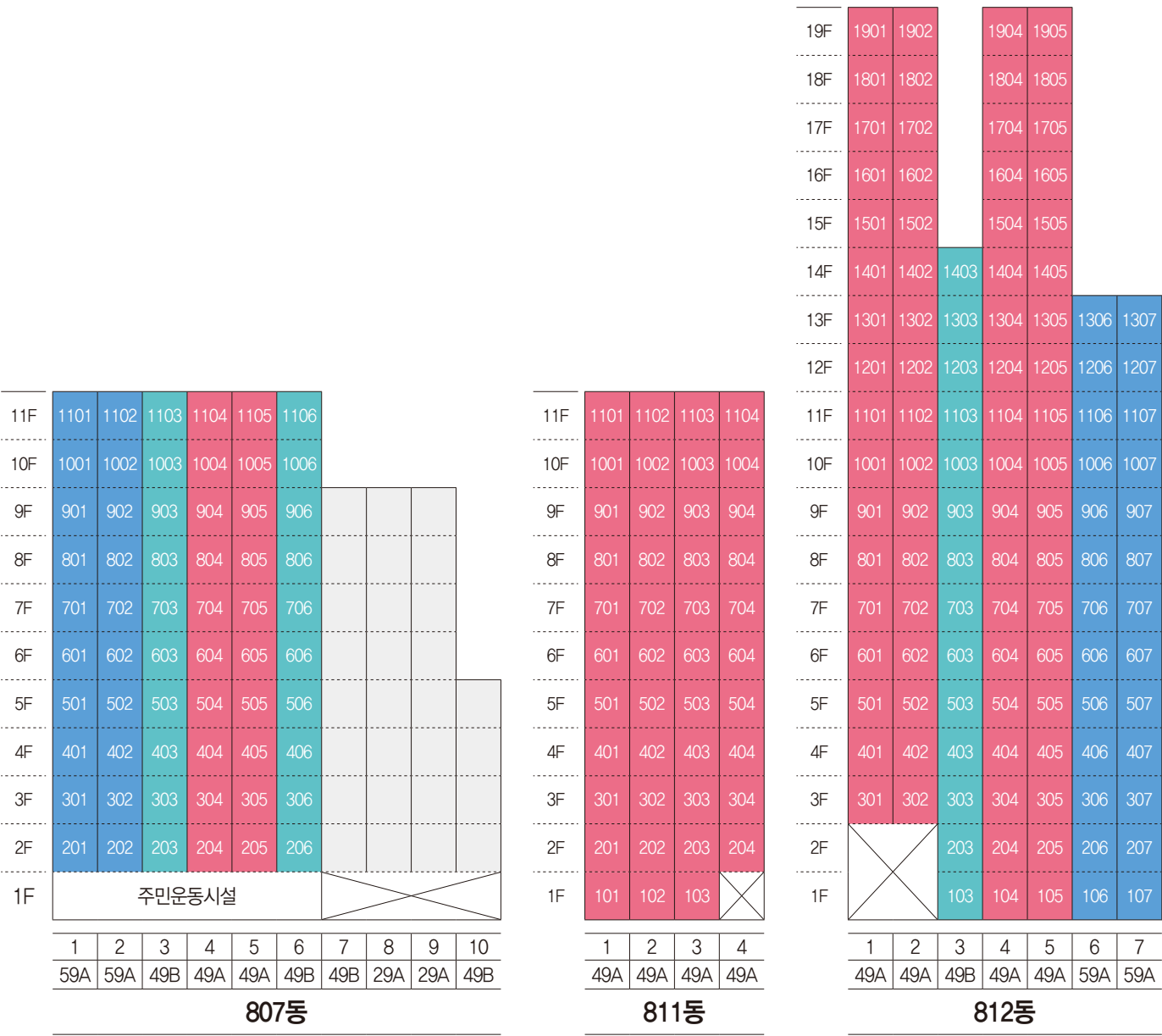
동호수배치도 8단지



PLAN
MAPS



8단지 동호수배치도



※ 상기 동 · 호수 배치도는 제작 과정상 오타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동 · 호수 배치도는 제작 과정상 오타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NI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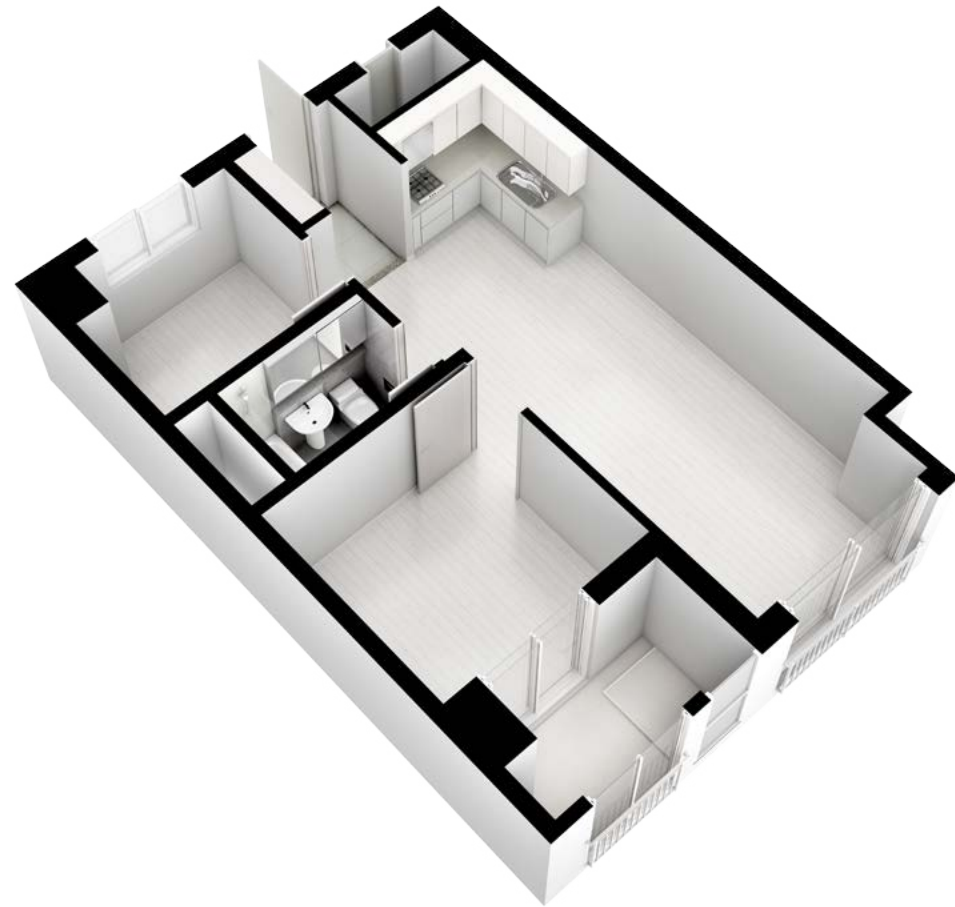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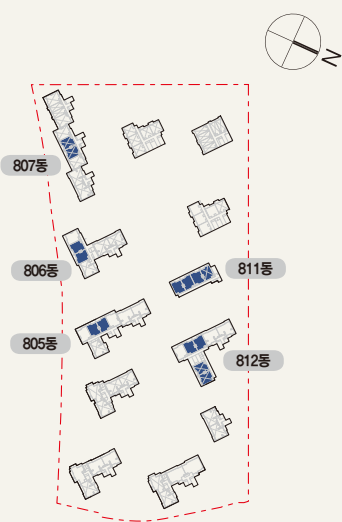
단위세대 평면도 8단지

49A

177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74㎡
주거공용면적	22.40㎡
기타공용면적	3.23㎡
지하주차장	33.00㎡
계약면적	108.37㎡



※ 적색 점선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입니다.(적색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부분입니다.)

※ 상기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구 및 단지별동 일평면유형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류, 바닥재 등을 포함하는 마감재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단지별(시공사) 및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벽체는 경량벽체입니다.

UNI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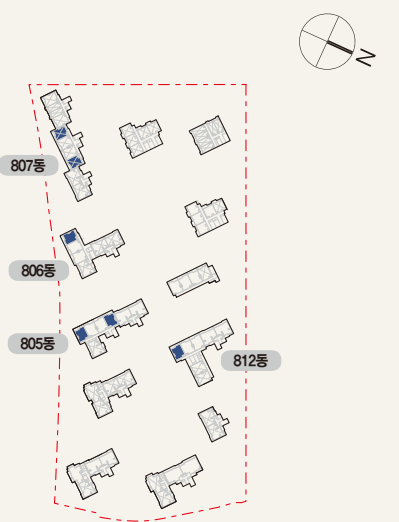
8단지 단위세대 평면도

49B

65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80㎡
주거공용면적	22.09㎡
기타공용면적	3.23㎡
지하주차장	33.04㎡
계약면적	108.16㎡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도면상의 치수는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가구반입시 반드시 내부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창호의 규격 및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평면 유형이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NI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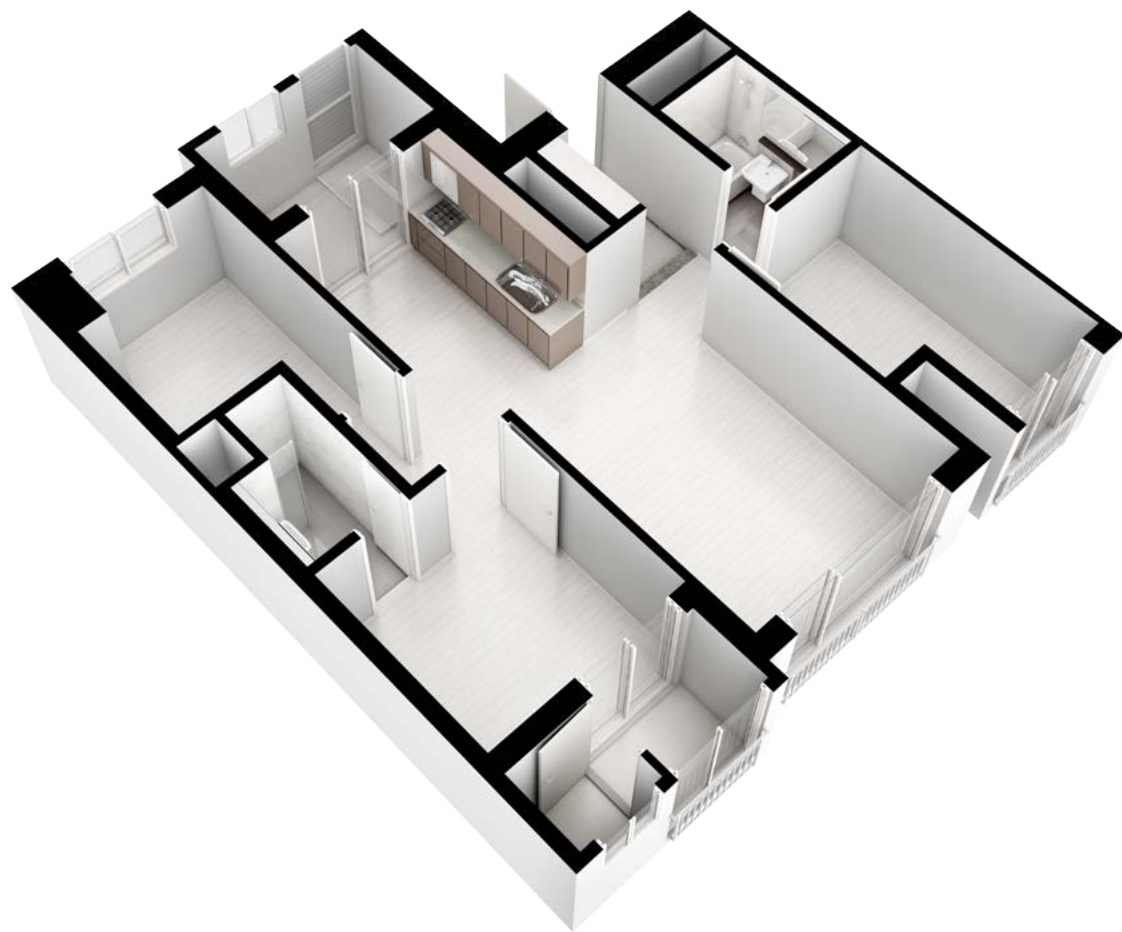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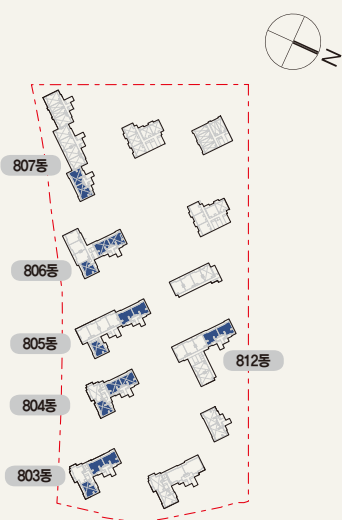
단위세대 평면도 8단지

59A

241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7㎡
주거공용면적	26.94㎡
기타공용면적	3.89㎡
지하주차장	39.80㎡
계약면적	130.60㎡



※ 적색 점선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입니다.(적색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부분입니다.)

※ 상기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구 및 단지별동 일평면유형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류, 바닥재 등을 포함하는 마감재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단지별(시공사) 및 시공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벽체는 경량벽체입니다.

UNI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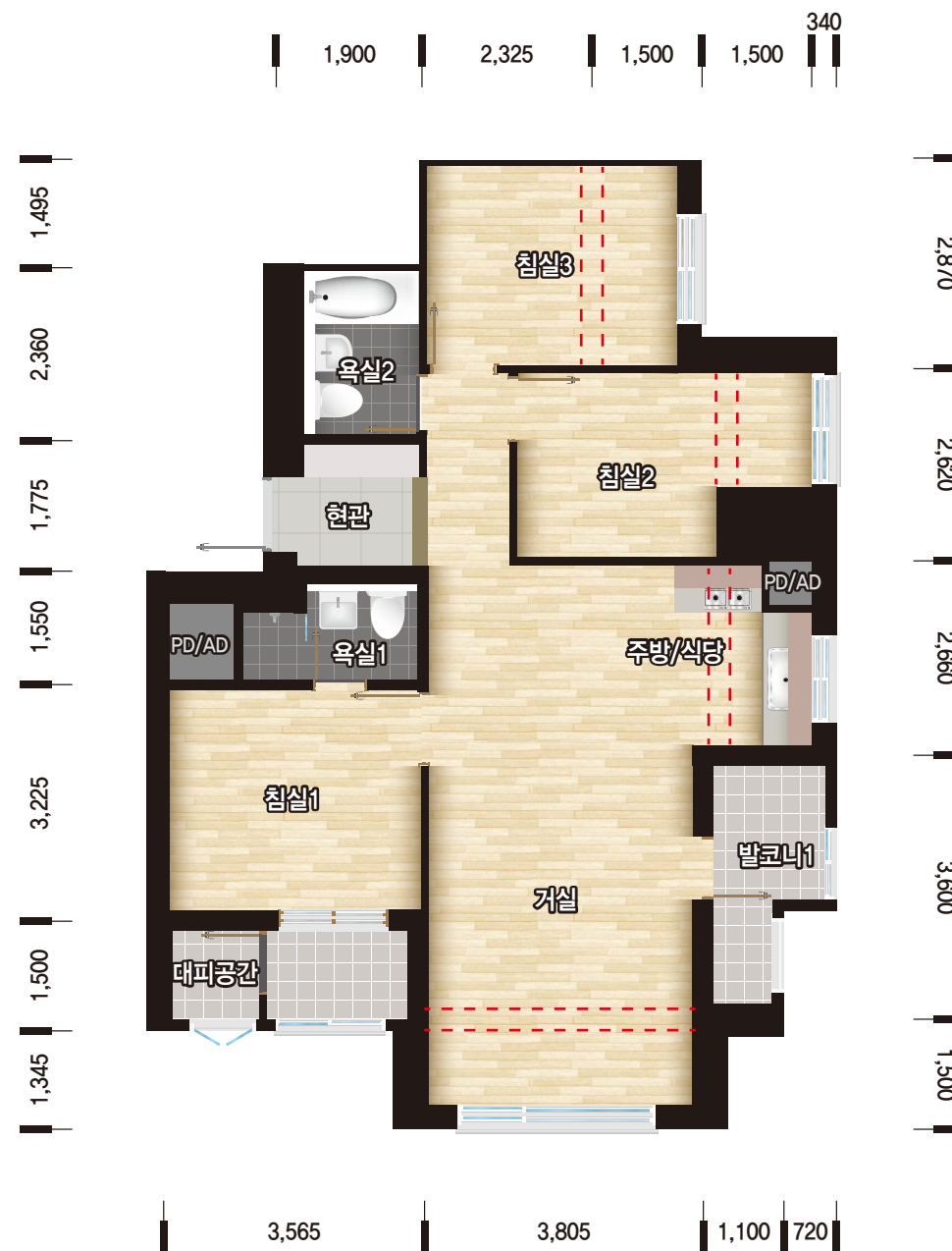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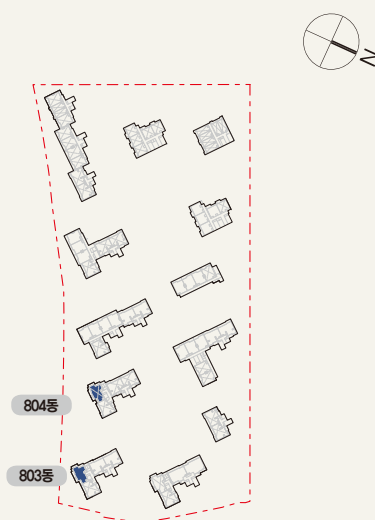
8단지 단위세대 평면도

59B

43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55㎡
주거공용면적	26.38㎡
기타공용면적	3.87㎡
지하주차장	39.52㎡
계약면적	129.32㎡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도면상의 치수는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가구반입시 반드시 내부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창호의 규격 및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평면 유형이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RIDE OF LANDSCAPE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14단지



총 946세대 중 공공분양 411세대

타입	49A㎡	59A㎡	59B㎡	합계
세대수	206	198	7	411

※ 상기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개략도이므로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상기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전용면적이라도 구조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LAN
MAPS

49A

59A

59B

필로티

49A

5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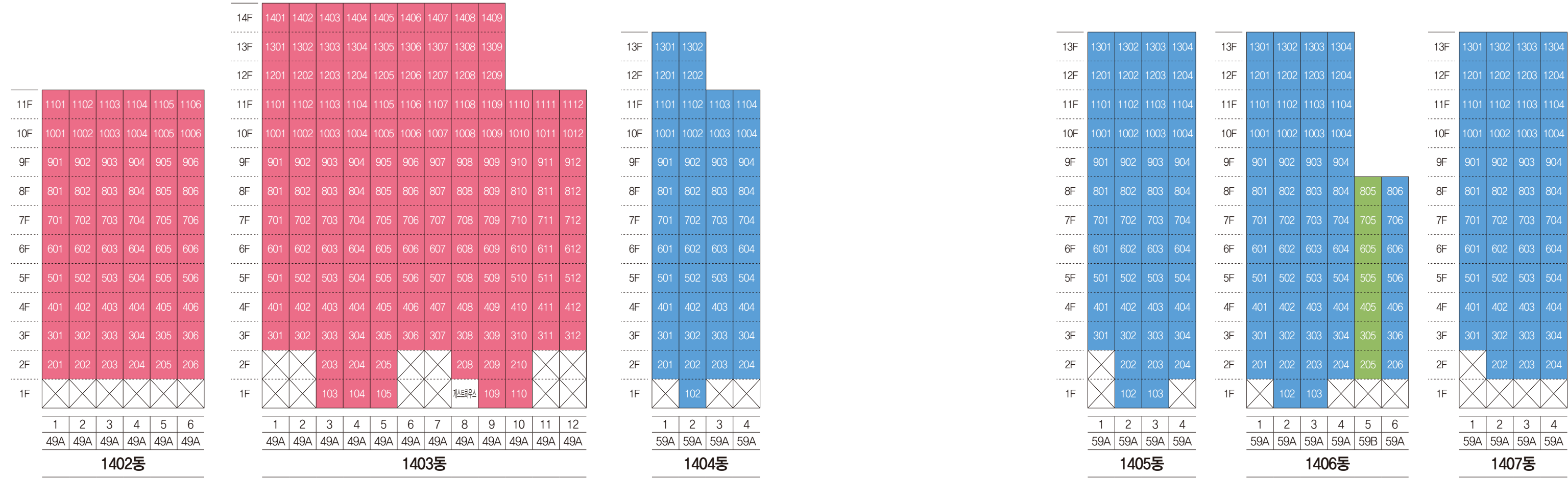
59B

필로티

PLAN
MAPS

동호수배치도 14단지

14단지 동호수배치도



※ 상기 동 · 호수 배치도는 제작 과정에서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동 · 호수 배치도는 제작 과정에서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NI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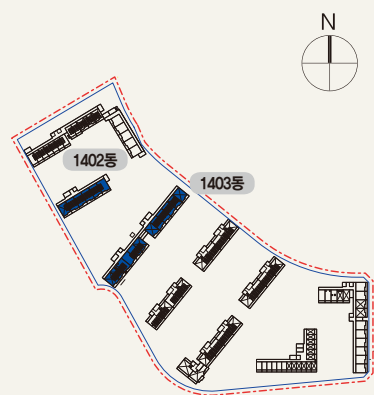
단위세대 평면도 14단지

49A

206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69㎡
주거공용면적	22.32㎡
기타공용면적	5.11㎡
지하주차장	37.70㎡
계약면적	114.82㎡



※ 적색 점선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입니다.(적색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부분입니다.)

※ 상기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구 및 단지별동 일평면유형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류, 바닥재 등을 포함하는 마감재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단지별(시공사) 및 시공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벽체는 경량벽체입니다.

UNI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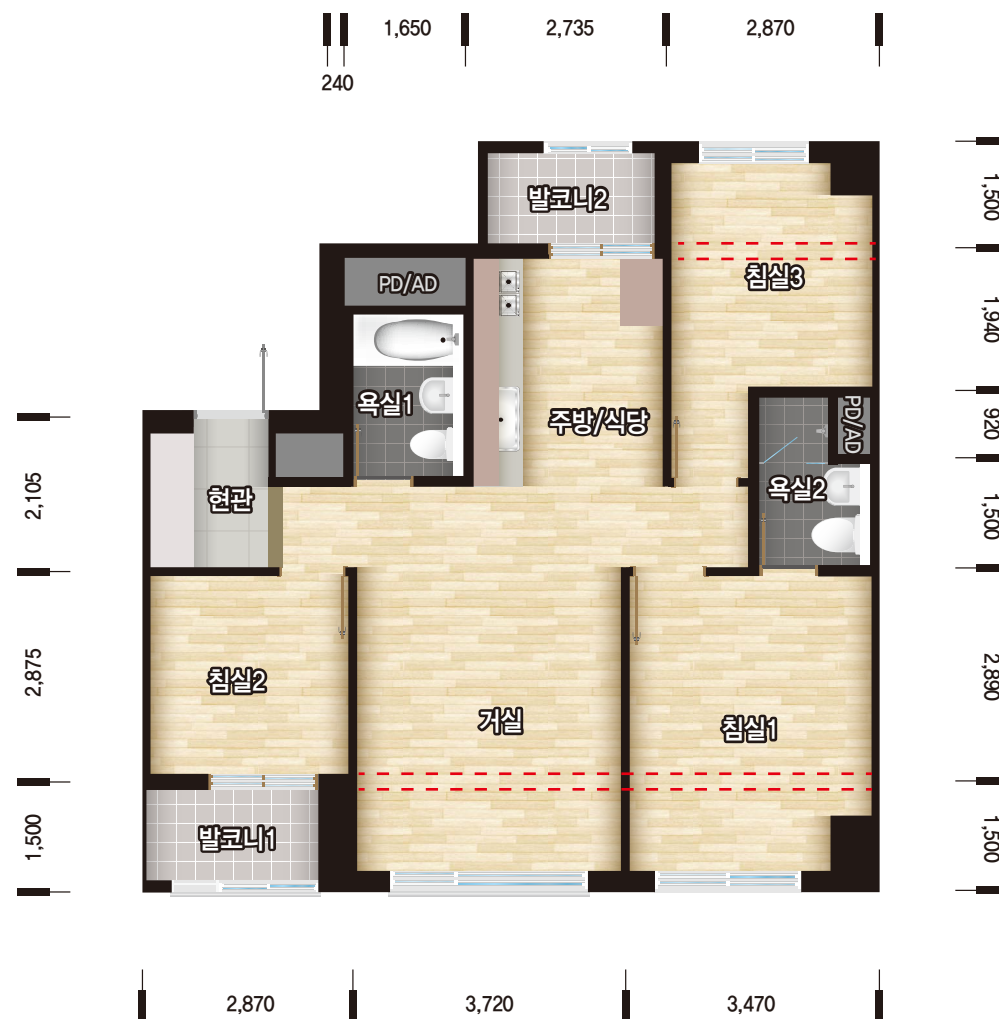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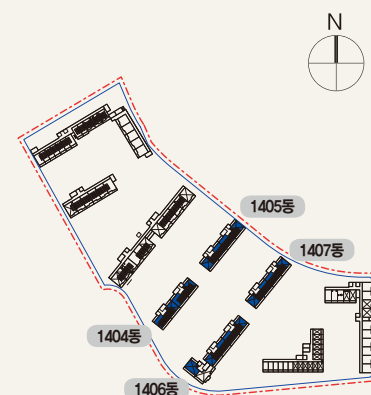
14단지 단위세대 평면도

59A

198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4㎡
주거공용면적	26.72㎡
기타공용면적	6.16㎡
지하주차장	45.47㎡
계약면적	138.29㎡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도면상의 치수는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가구반입시 반드시 내부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창호의 규격 및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평면 유형이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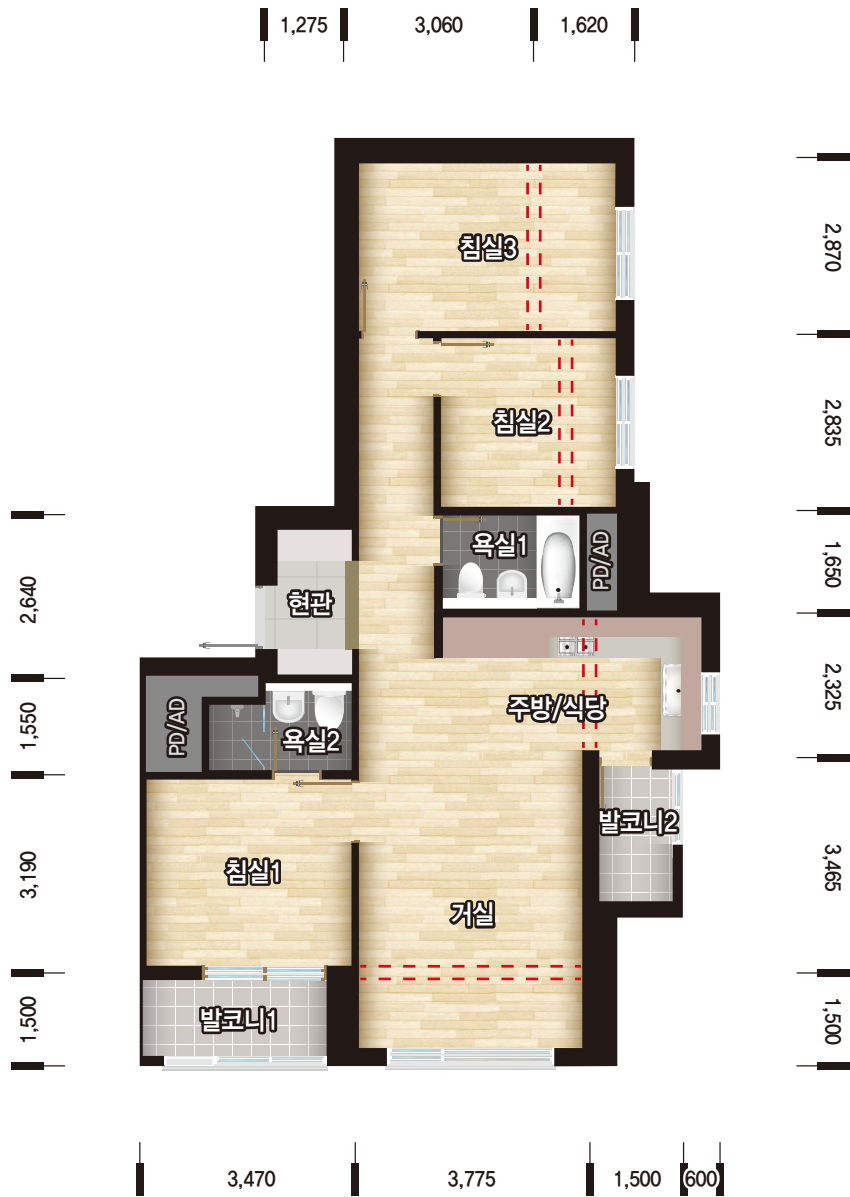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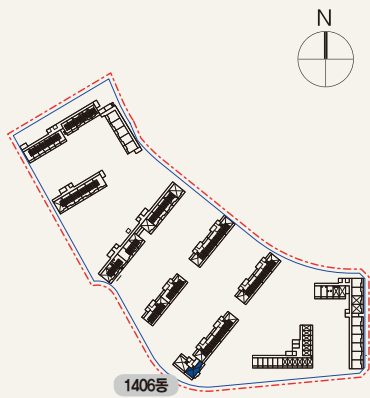
UNIT PLAN

단위세대 평면도 14단지

59B

7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78㎡
주거공용면적	27.87㎡
기타공용면적	6.14㎡
지 하 주 차 장	45.35㎡
계 약 면 적	139.14㎡



※ 적색 점선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입니다.(적색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부분입니다.)
※ 상기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구 및 단지별동 일평면유형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류, 바닥재 등을 포함하는 마감재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단지별(시공사) 및 시공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벽체는 경량벽체입니다.

• 마감자재 목록[각 공종별 작성, 누락된 시설물 추가기재]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분양)			
구분	항목	전용49㎡	전용59㎡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형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철재방화문	철재방화문
	바닥	폴리싱타일	폴리싱타일
	마루귀틀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
	신발장	설치	설치
	현관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적용
거실	수도계량기	없음(복도부 PD내 설치)	없음(E/V 전실 PD내 설치)
	벽지/천장지	친환경 실크벽지	친환경 실크벽지
	거실아트월	미설치	설치(폴리싱타일)
	거실가구	미설치	미설치
	월패드(홈네트워크)	적용	적용
	네트워크 스위치	적용	적용
주방	바닥	표면강화치장목질 합판마루	표면강화치장목질 합판마루
	벽지/천장지	친환경 실크벽지	친환경 실크벽지
	바닥	표면강화치장목질 합판마루	표면강화치장목질 합판마루
	주방벽	도기질타일, 친환경실크벽지	도기질타일, 친환경실크벽지
	주방가구	문짝 상판 ASA마감, 경면LPM마감	ASA마감
	주방라디오폰	적용	적용
	걸레받이	무늬목 시트	무늬목 시트
	레인지후드	설치	설치
	빌트인 가스쿡탑	설치	설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음식물탈수기	음식물탈수기
	싱크수전 절수기	설치	설치
	행주도마살균기	미설치	미설치
주침실	바닥	표면강화치장목질 합판마루	표면강화치장목질 합판마루
	화장대	해당없음	해당없음
	드레스룸 의류수납장	해당없음	해당없음
침실	침실문	문틀/문선 문짝	래핑 문틀 위 목무늬 시트마감 목재 여단이문
	바닥	표면강화치장목질 합판마루	표면강화치장목질 합판마루
욕실	벽지/천장지	친환경실크벽지	친환경실크벽지
	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천장	SMC 천정재	PVC 천정재
	세면기	세미페데스탈형	세미페데스탈형
	욕조(공용욕실)	세라믹제품	세라믹제품
	욕조수전(공용욕실)	싱글레버식	싱글레버식
	샤워수전(부부욕실)	없음	레인형샤워
	양변기	원피스형	원피스형
	비데	없음	없음
발코니	청소용솔	설치	설치
	청소용수전	설치(양변기용 앵글밸브 사용)	설치(양변기용 앵글밸브 사용)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내부창호(분합문)	합성수지창호	합성수지창호
	외부창호(단창)	합성수지창호	합성수지창호
	발코니샤시	합성수지창호	합성수지창호
	(확장형 창호 이중창)		
	발코니동작감지기	최상층 및 1층~2층	최상층 및 1층~2층
	손빨래,세탁기수전	일반수전(커피클리닝볼이, 십자핸들)	일반수전(커피클리닝볼이, 십자핸들)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및 주침실(벽설치형)에 설치	거실 및 주침실(벽설치형)에 설치
환기시스템		자연환기시스템	강제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적용)
조명 설비	식탁등	LED	LED
	각실 조명등기구	LED	LED
	현관센서등	LED	LED
		거실등	LED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4단지 (분양)			
구분	항목	전용49㎡	전용59㎡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도어록(모델명:CDL-200P)	디지털도어록(모델명:CDL-200P)
	세대현관문	방화문	방화문
	바닥	폴리싱타일	폴리싱타일
	마루귀틀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
	신발장	설치	설치
	현관일괄소등스위치	미설치	미설치
거실	수도,온수계량기,열량계	현관외부설치	현관외부설치
	가스미터기	설치	미설치
	벽지/천장지	친환경벽지(실크)	친환경벽지(실크)
	거실아트월	포인트벽지	폴리싱타일
	거실가구	없음	없음
	바닥	합판마루	합판마루
주방	온도조절기	설치	설치
	환기조절기	미설치	설치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	설치
	벽지/천장지	친환경벽지(실크)	친환경벽지(실크)
	바닥	합판마루	합판마루
	주방벽	타일	타일
	주방가구	문짝 상판	PET마감 인조대리석 하이박스 중첩
	주방TV	미설치	미설치
	라디오폰	설치	설치
	걸레받이	합성수지/무늬목시트	합성수지/무늬목시트
	레인지후드	설치	설치
	빌트인 가스쿡탑	설치	설치
주침실	바닥	합판마루	합판마루
	화장대	해당없음	해당없음
	드레스룸 의류수납장	미설치	미설치
침실	침실문	문틀/문선 문짝	목재문틀 목재문(멤브레인)
	바닥	합판마루	합판마루
욕실	벽지/천장지	친환경벽지(실크)	친환경벽지(실크)
	온도조절기	설치	설치
	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천장	SMC천정재	SMC천정재
	세면기	설치	설치
	욕조(공용욕실)	설치	설치
	욕조수전(공용욕실)	설치	설치
	샤워수전(부부욕실)	미설치	설치
	양변기	설치	설치
발코니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내부창호	합성수지제창호	합성수지제창호
	외부창호	합성수지제창호	합성수지제창호
	발코니샤시	합성수지제창호	합성수지제창호
	세탁기수전	설치	설치
	가스미터기	미설치	설치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	설치
	환기시스템	미설치	설치
조명 설비	식탁등	설치	설치
	각실 조명등기구	설치	설치
	거실벽부등	최상층세대 설치	최상층세대 설치
기타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 **분양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8, 14단지
- ▶ **분양대상** : 공공분양주택 937세대 (8단지 526세대, 14단지 411세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콜센터(1600-3456)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으로, 본인의 청약자격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 사항**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14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만 공개합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도 우편접수로 진행되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각종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자 등 관련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은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2020.05.27.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6.02.(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견본주택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되며, 카탈로그, 입주자모집공고 안내문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은 국민일보, 한겨레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공급 관련 팸플릿은 **2020.06.02.(화) 13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분양수납부에서 배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 팸플릿은 **2020.06.02.(화) 15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책자팸플릿은 한정된 수량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며「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법」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이며 **재당첨제한(10년) 적용주택**입니다.
- 고덕강일지구는 향후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업추진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분양단지를 포함한 단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5호, 2020.03.01.)에 의거 건축공정률 60%를 초과한 이후에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오피스제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중 하나에 해당하여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최하층을 우선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3층인 주택이 있음) 고령자 세대 및 장애인 세대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의 세대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세대, 장애인 세대에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본 공고문에서 ‘세대에 속한 자’라 함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시: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 및 분양권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2호)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등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금회 분양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1세대 1명만 청약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10%] 및 사용료를 공제합니다.
-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분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분은 금회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하여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청약자격(거주지역, 입주자지속 가입기간, 소득·자산요건,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사에서 전산검색,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청약자격을 확인한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기간에 해당 청약자격이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금번 모집은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접수방법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및 접수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주택형」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 내에서 공급유형별, 향별, 층별, 동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추첨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특별 및 일반공급(제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로 전산관리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는 거주지·연락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주민등록표등본·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름 및 연락처 기재, FAX 02-3410-7515 발송 후 전화확인) 주소 및 연락처 변동사항 미고지로 인한 공급대상 제외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타인 명의로 가입된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해제)되고,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주택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주택법」 제65조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계약취소(해제)되는 경우 주택분양계약에서 규정한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명단관리 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 여부, 자산·소득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주택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필요한 제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 및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 **금회 청약에 사용하는 입주자저축 계좌를 청약신청 이후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로 인해 청약사실 누락 또는 순위확인서 발급불가로 당첨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까지 계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적격 통보 이후 계약금 대체 가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금회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며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6.26.)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됨. 또한 전매제한기간 내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포함)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지 않는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사항은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 됨

※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하남시·성남시 분당구,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금회 공급하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내에서 건설되는 주택이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해외거주에 대한 판단 기준
1) '18.06.02.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18.06.02.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수도권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 14단지 분양아파트의 입주 의무 및 거주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 의무 일람표						
지구	단지	전용면적 (㎡)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전매제한기간	최초 입주가능일	거주의무기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	49	2020.06.26.	10년	2021.02.15. (예정)	5년
		59				
	14	49				
		59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관련 법령 및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며,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

사업주체, 건설위치, 시공업체 및 감리회사명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지구 및 단지	건설위치	건설현황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감리회사 및 금액	난방 방식
			계	분양	임대			
서울주택 도시공사 (218-82-00136)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6번지 일원	946	526	420	(주)대보건설 (313-81-02806) 신해공영(주) (204-86-44152) (주)세방테크 (229-81-12111)	o 업체명 (주)히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세움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o 감리금액 : 4,841,200,000원	지역 난방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4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28번지 일원	943	411	532	대우조선해양건설(주) (214-86-55210) 흥웅종합건설(주) (212-81-74220) 지에스네오텍(주) (113-81-07384)	o 업체명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주)케이디엔지니어링 o 감리금액 : 4,393,000,000원	지역 난방

2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공급세대수						
공급대상							

지구	단지	주택유형	분양주택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발코니 유	평면 유형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	분양 건설 세대 수	분양세대수										최고 층 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공급면적(A)			그밖의 공용면적(B)		계약 면적 (A+B)			합 계	특별분양							일반 분양			
																소 계	다 자 녀	노 부 모 부 양	신 혼 부 부	생 애 최 초	기타 (기관 추천 등)					
고 덕 강 일	8	국 민	계										526	526	448	52	16	157	104	119	78					
			2020000674-01	049.0000H	확장	49A	72.14	49.74	22.40	3.23	33.00	108.37	36.04	242	242	197	15	4	110	62	6	45	19	20		
			2020000674-02	059.0000H	확장	49B	71.89	49.80	22.09	3.23	33.04	108.16	36.09	284	284	251	37	12	47	42	113	33	22	17		
						59A	86.91	59.97	26.94	3.89	39.80	130.60	43.46													
	14	국 민	계										411	411	354	41	13	123	82	95	57					
			2020000681-01	049.0000H	확장	49A	72.01	49.69	22.32	5.11	37.70	114.82	38.24	206	206	171	13	3	92	50	13	35	14	18		
2020000681-02			059.0000H	확장	59A	86.66	59.94	26.72	6.16	45.47	138.29	46.13	205	205	183	28	10	31	32	82	22	13	18			
					59B	87.65	59.78	27.87	6.14	45.35	139.14	46.01														

- 기타공용면적은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증감이 없는 것으로 봄
- 위 공급대상의 ‘**평면유형**’은 **청약신청자의 팸플릿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최고층수는 공급대상 주택형의 최고층수를 표시한 것임(동·호수는 팸플릿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 평면유형 내에 설치되는 면적(발코니 면적 등 포함)은 세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수 조정 등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각 주택형별 평면유형은 청약자가 선택/변경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 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
- 동·호수는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평면유형, 동, 층, 향, 신청순위에 관계없이**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됨.

3 분양주택가격 및 납부방법

세대별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금액이며, 주택가격은 **평면유형, 층, 향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가격**으로 세대별 주택가격이 다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본 주택가격에는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 금회 공급하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 14단지 분양주택은 전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주방, 침실 등의 발코니 확장여부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가격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래 표에서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된 금액**임.
- 입주금(주택가격)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발코니확장 잔금 포함)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발코니확장 잔금포함)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한 열쇠불출이 불가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입주금은 아래의 순서로 수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① 계약금 ② 발코니확장 계약금 ③ 중도금 ④ 잔금 ⑤ 발코니확장 잔금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음.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분양가액은 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 **8단지 동호별 주택가격 (526세대)**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03	102	059.0000H	59B	435,100	87,020	87,020	261,060	1,702,800
803	103	059.0000H	59A	447,500	89,500	89,500	268,500	500,500
803	104	059.0000H	59A	447,500	89,500	89,500	268,500	500,500
803	201	059.0000H	59A	447,500	89,500	89,500	268,500	500,500
803	202	059.0000H	59B	439,700	87,940	87,940	263,820	1,702,800
803	203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3	204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03	301	059.0000H	59A	447,500	89,500	89,500	268,500	500,500
803	302	059.0000H	59B	439,700	87,940	87,940	263,820	1,702,800
803	303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3	304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3	401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3	402	059.0000H	59B	449,000	89,800	89,800	269,400	1,702,800
803	403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3	404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3	501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3	502	059.0000H	59B	449,000	89,800	89,800	269,400	1,702,800
803	503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3	504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3	601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3	602	059.0000H	59B	449,000	89,800	89,800	269,400	1,702,800
803	603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3	604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3	7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3	702	059.0000H	59B	453,600	90,720	90,720	272,160	1,702,800
803	703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3	704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3	8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3	802	059.0000H	59B	453,600	90,720	90,720	272,160	1,702,800
803	803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3	804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3	9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3	902	059.0000H	59B	453,600	90,720	90,720	272,160	1,702,800
803	903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3	904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3	10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3	1002	059.0000H	59B	458,200	91,640	91,640	274,920	1,702,800
803	1003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3	1004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3	11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3	1102	059.0000H	59B	458,200	91,640	91,640	274,920	1,702,800
803	1103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3	1104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3	12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3	1202	059.0000H	59B	458,200	91,640	91,640	274,920	1,702,800
803	1203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3	1204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3	1301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3	1302	059.0000H	59B	462,900	92,580	92,580	277,740	1,702,800
803	1303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3	1304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3	1401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3	1402	059.0000H	59B	462,900	92,580	92,580	277,740	1,702,8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03	1403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3	1404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3	1501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3	1502	059.0000H	59B	462,900	92,580	92,580	277,740	1,702,800
803	1503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3	1504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3	1601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3	1602	059.0000H	59B	467,500	93,500	93,500	280,500	1,702,800
803	1603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3	1604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3	1701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3	1702	059.0000H	59B	467,500	93,500	93,500	280,500	1,702,800
803	1703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3	1704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3	1801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3	1802	059.0000H	59B	467,500	93,500	93,500	280,500	1,702,800
803	1803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3	1804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3	1901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3	1902	059.0000H	59B	472,100	94,420	94,420	283,260	1,702,800
803	1903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3	1904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3	2001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3	2002	059.0000H	59B	472,100	94,420	94,420	283,260	1,702,800
803	2003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3	2004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3	2101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3	2102	059.0000H	59B	472,100	94,420	94,420	283,260	1,702,800
803	2103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3	2104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3	2201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3	2202	059.0000H	59B	476,700	95,340	95,340	286,020	1,702,800
803	2203	059.0000H	59A	489,400	97,880	97,880	293,640	500,500
803	2204	059.0000H	59A	489,400	97,880	97,880	293,640	500,500
804	201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4	202	059.0000H	59B	449,000	89,800	89,800	269,400	1,702,800
804	203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4	204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4	301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4	302	059.0000H	59B	449,000	89,800	89,800	269,400	1,702,800
804	303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4	304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4	4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4	402	059.0000H	59B	453,600	90,720	90,720	272,160	1,702,800
804	403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4	404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04	5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4	502	059.0000H	59B	453,600	90,720	90,720	272,160	1,702,800
804	503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4	504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4	6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4	602	059.0000H	59B	453,600	90,720	90,720	272,160	1,702,800
804	603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4	604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4	7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4	702	059.0000H	59B	458,200	91,640	91,640	274,920	1,702,800
804	703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4	704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4	8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4	802	059.0000H	59B	458,200	91,640	91,640	274,920	1,702,800
804	803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4	804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4	9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4	902	059.0000H	59B	458,200	91,640	91,640	274,920	1,702,800
804	903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4	904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4	1001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4	1002	059.0000H	59B	462,900	92,580	92,580	277,740	1,702,800
804	1003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4	1004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4	1101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4	1102	059.0000H	59B	462,900	92,580	92,580	277,740	1,702,800
804	1103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4	1104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4	1201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4	1202	059.0000H	59B	462,900	92,580	92,580	277,740	1,702,800
804	1203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4	1204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4	1301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4	1302	059.0000H	59B	472,100	94,420	94,420	283,260	1,702,800
804	1303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4	1304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4	1401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4	1402	059.0000H	59B	472,100	94,420	94,420	283,260	1,702,800
804	1403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4	1404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4	1501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4	1502	059.0000H	59B	472,100	94,420	94,420	283,260	1,702,800
804	1503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4	1504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4	1601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4	1602	059.0000H	59B	476,700	95,340	95,340	286,020	1,702,8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04	1603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4	1604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4	1701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4	1702	059.0000H	59B	476,700	95,340	95,340	286,020	1,702,800
804	1703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4	1704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4	1801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4	1802	059.0000H	59B	476,700	95,340	95,340	286,020	1,702,800
804	1803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4	1804	059.0000H	59A	480,100	96,020	96,020	288,060	500,500
804	1901	059.0000H	59A	489,400	97,880	97,880	293,640	500,500
804	1902	059.0000H	59B	481,400	96,280	96,280	288,840	1,702,800
804	1903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4	1904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4	2001	059.0000H	59A	489,400	97,880	97,880	293,640	500,500
804	2002	059.0000H	59B	481,400	96,280	96,280	288,840	1,702,800
804	2003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4	2004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4	2101	059.0000H	59A	489,400	97,880	97,880	293,640	500,500
804	2102	059.0000H	59B	481,400	96,280	96,280	288,840	1,702,800
804	2103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4	2104	059.0000H	59A	484,800	96,960	96,960	290,880	500,500
804	2201	059.0000H	59A	494,100	98,820	98,820	296,460	500,500
804	2202	059.0000H	59B	486,000	97,200	97,200	291,600	1,702,800
804	2203	059.0000H	59A	489,400	97,880	97,880	293,640	500,500
804	2204	059.0000H	59A	489,400	97,880	97,880	293,640	500,500
805	102	049.0000H	49B	374,300	74,860	74,860	224,580	311,300
805	103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05	104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05	105	049.0000H	49B	374,300	74,860	74,860	224,580	311,300
805	106	059.0000H	59A	447,500	89,500	89,500	268,500	500,500
805	107	059.0000H	59A	447,500	89,500	89,500	268,500	500,500
805	201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5	202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05	203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05	204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05	205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05	206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5	207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5	301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5	302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05	303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05	304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05	305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05	306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5	307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05	4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5	402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5	403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5	4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5	405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5	406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5	407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5	5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5	502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5	503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5	5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5	505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5	506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5	507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5	6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5	602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5	603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5	6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5	605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5	606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5	607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5	702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5	703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5	704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5	705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5	706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5	707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5	802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5	803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5	804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5	805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5	806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5	807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5	902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5	903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5	904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5	905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5	906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5	907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5	1002	049.0000H	49B	394,000	78,800	78,800	236,400	311,300
805	1003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05	1004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05	1005	049.0000H	49B	394,000	78,800	78,800	236,400	311,300
805	1006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5	1007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5	1106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5	1107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05	1206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5	1207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5	1306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5	1307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5	1406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5	1407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6	102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06	103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06	104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06	201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6	202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6	203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6	204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806	205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6	206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6	301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6	302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6	303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6	304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806	305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6	306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6	4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6	402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6	403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6	404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6	405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6	406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6	5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6	502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6	503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6	504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6	505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6	506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6	601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6	602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6	603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6	604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6	605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6	606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06	7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6	702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6	703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6	704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6	705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6	706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06	8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6	802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6	803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6	804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6	805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6	806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6	9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6	902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6	903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6	904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6	905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6	906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6	1001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6	1002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06	1003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06	1004	049.0000H	49B	394,000	78,800	78,800	236,400	311,300
806	1005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6	1006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6	1101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6	1102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06	1103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06	1104	049.0000H	49B	394,000	78,800	78,800	236,400	311,300
806	1105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6	1106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6	1205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6	1206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6	1305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6	1306	059.0000H	59A	475,400	95,080	95,080	285,240	500,500
807	201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7	202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7	203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07	204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07	205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07	206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07	301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7	302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07	303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07	304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07	305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07	306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07	401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7	402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7	403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807	4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7	405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7	406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07	501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7	502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7	503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807	5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7	505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7	506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807	601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7	602	059.0000H	59A	456,800	91,360	91,360	274,080	500,500
807	603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807	6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7	605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07	606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807	7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7	702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7	703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7	704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7	705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7	706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7	8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7	802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7	803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7	804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7	805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7	806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7	901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7	902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07	903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7	904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7	905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07	906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07	1001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7	1002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7	1003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7	1004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7	1005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7	1006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7	1101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7	1102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07	1103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07	1104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7	1105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07	1106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11	101	049.0000H	49A	369,900	73,980	73,980	221,940	311,300
811	102	049.0000H	49A	369,900	73,980	73,980	221,940	311,300
811	103	049.0000H	49A	369,900	73,980	73,980	221,940	311,300
811	201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11	202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11	203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11	204	049.0000H	49A	369,900	73,980	73,980	221,940	311,300
811	301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11	302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11	303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11	304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11	401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402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403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404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501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502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503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504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601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602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603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604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1	701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702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703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7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801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802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803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8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901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902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903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9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1	1001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1	1002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1	1003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1	1004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1	1101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1	1102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1	1103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1	1104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103	049.0000H	49B	370,300	74,060	74,060	222,180	311,300
812	104	049.0000H	49A	369,900	73,980	73,980	221,940	311,300
812	105	049.0000H	49A	369,900	73,980	73,980	221,940	311,300
812	106	059.0000H	59A	442,800	88,560	88,560	265,680	500,500
812	107	059.0000H	59A	442,800	88,560	88,560	265,680	500,500
812	203	049.0000H	49B	374,300	74,860	74,860	224,580	311,300
812	204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12	205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12	206	059.0000H	59A	447,500	89,500	89,500	268,500	500,500
812	207	059.0000H	59A	447,500	89,500	89,500	268,500	500,500
812	301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2	302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2	303	049.0000H	49B	374,300	74,860	74,860	224,580	311,300
812	304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12	305	049.0000H	49A	373,800	74,760	74,760	224,280	311,300
812	306	059.0000H	59A	447,500	89,500	89,500	268,500	500,500
812	307	059.0000H	59A	447,500	89,500	89,500	268,500	500,500
812	401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402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403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12	404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2	405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2	406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12	407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12	501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502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503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12	504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2	505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2	506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12	507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12	601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602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603	049.0000H	49B	378,200	75,640	75,640	226,920	311,300
812	604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2	605	049.0000H	49A	377,700	75,540	75,540	226,620	311,300
812	606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12	607	059.0000H	59A	452,100	90,420	90,420	271,260	500,500
812	701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12	702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12	703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812	7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2	705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2	706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12	707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12	801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12	802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12	803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812	8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2	805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2	806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12	807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12	901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812	902	049.0000H	49A	389,600	77,920	77,920	233,760	311,3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812	903	049.0000H	49B	382,100	76,420	76,420	229,260	311,300
812	904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2	905	049.0000H	49A	381,700	76,340	76,340	229,020	311,300
812	906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12	907	059.0000H	59A	461,400	92,280	92,280	276,840	500,500
812	1001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002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003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12	1004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1005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1006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12	1007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12	1101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102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103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12	1104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1105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1106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12	1107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12	1201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202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203	049.0000H	49B	386,100	77,220	77,220	231,660	311,300
812	1204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1205	049.0000H	49A	385,600	77,120	77,120	231,360	311,300
812	1206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12	1207	059.0000H	59A	466,100	93,220	93,220	279,660	500,500
812	1301	049.0000H	49A	401,400	80,280	80,280	240,840	311,300
812	1302	049.0000H	49A	401,400	80,280	80,280	240,840	311,300
812	1303	049.0000H	49B	394,000	78,800	78,800	236,400	311,300
812	1304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305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306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12	1307	059.0000H	59A	470,800	94,160	94,160	282,480	500,500
812	1401	049.0000H	49A	401,400	80,280	80,280	240,840	311,300
812	1402	049.0000H	49A	401,400	80,280	80,280	240,840	311,300
812	1403	049.0000H	49B	390,000	78,000	78,000	234,000	311,300
812	1404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405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501	049.0000H	49A	401,400	80,280	80,280	240,840	311,300
812	1502	049.0000H	49A	401,400	80,280	80,280	240,840	311,300
812	1504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505	049.0000H	49A	393,500	78,700	78,700	236,100	311,300
812	1601	049.0000H	49A	405,300	81,060	81,060	243,180	311,300
812	1602	049.0000H	49A	405,300	81,060	81,060	243,180	311,300
812	1604	049.0000H	49A	397,400	79,480	79,480	238,440	311,300
812	1605	049.0000H	49A	397,400	79,480	79,480	238,440	311,3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403	1104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105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106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107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108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109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110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111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112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201	049.0000H	49A	407,900	81,580	81,580	244,740	488,400
1403	1202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203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204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205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206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207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208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209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301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302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303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304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305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306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307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308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309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401	049.0000H	49A	412,000	82,400	82,400	247,200	488,400
1403	1402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403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404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405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406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407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408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3	1409	049.0000H	49A	416,000	83,200	83,200	249,600	488,400
1404	102	059.0000H	59A	481,600	96,320	96,320	288,960	402,600
1404	201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4	202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4	203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4	204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4	301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4	302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4	303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4	304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4	4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4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404	4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4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5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5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5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5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6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6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6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6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4	701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4	7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4	703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4	704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4	801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4	8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4	803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4	804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4	901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4	9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4	903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4	904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4	1001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4	1002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4	1003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4	1004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4	1101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4	1102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4	1103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4	1104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4	1201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4	1202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4	1301	059.0000H	59A	510,700	102,140	102,140	306,420	402,600
1404	1302	059.0000H	59A	510,700	102,140	102,140	306,420	402,600
1405	102	059.0000H	59A	476,700	95,340	95,340	286,020	402,600
1405	103	059.0000H	59A	476,700	95,340	95,340	286,020	402,600
1405	202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5	203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5	204	059.0000H	59A	481,600	96,320	96,320	288,960	402,6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405	501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5	5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5	5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5	5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5	601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5	6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5	6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5	6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5	7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5	7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5	703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5	704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5	8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5	8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5	803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5	804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5	9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5	9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5	903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5	904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5	1001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002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003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004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101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102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103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104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201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202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203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204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5	1301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5	1302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5	1303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5	1304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02	059.0000H	59A	481,600	96,320	96,320	288,960	402,600
1406	103	059.0000H	59A	481,600	96,320	96,320	288,960	402,600
1406	201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406	304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6	305	059.0000H	59B	480,300	96,060	96,060	288,180	1,313,400
1406	306	059.0000H	59A	481,600	96,320	96,320	288,960	402,600
1406	4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4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4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4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405	059.0000H	59B	485,100	97,020	97,020	291,060	1,313,400
1406	406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6	5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5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5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5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505	059.0000H	59B	485,100	97,020	97,020	291,060	1,313,400
1406	506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6	6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6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6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6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605	059.0000H	59B	485,100	97,020	97,020	291,060	1,313,400
1406	606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6	701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7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703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704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705	059.0000H	59B	490,000	98,000	98,000	294,000	1,313,400
1406	706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801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8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803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804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805	059.0000H	59B	490,000	98,000	98,000	294,000	1,313,400
1406	806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6	901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9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903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904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6	1001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002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003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004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101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102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103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104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201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202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406	1203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204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6	1301	059.0000H	59A	510,700	102,140	102,140	306,420	402,600
1406	1302	059.0000H	59A	510,700	102,140	102,140	306,420	402,600
1406	1303	059.0000H	59A	510,700	102,140	102,140	306,420	402,600
1406	1304	059.0000H	59A	510,700	102,140	102,140	306,420	402,600
1407	202	059.0000H	59A	481,600	96,320	96,320	288,960	402,600
1407	203	059.0000H	59A	481,600	96,320	96,320	288,960	402,600
1407	204	059.0000H	59A	481,600	96,320	96,320	288,960	402,600
1407	301	059.0000H	59A	481,600	96,320	96,320	288,960	402,600
1407	302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7	303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7	304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7	401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7	4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4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4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501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7	5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5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5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601	059.0000H	59A	486,400	97,280	97,280	291,840	402,600
1407	602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603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604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7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7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7	703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7	704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7	8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8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7	803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7	804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7	901	059.0000H	59A	491,300	98,260	98,260	294,780	402,600
1407	902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7	903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7	904	059.0000H	59A	496,200	99,240	99,240	297,720	402,600
1407	1001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002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003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004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101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102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103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104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201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202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동	호	주택형	평면	주택가격(천원)				발코니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407	1203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204	059.0000H	59A	501,000	100,200	100,200	300,600	402,600
1407	1301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7	1302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7	1303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1407	1304	059.0000H	59A	505,900	101,180	101,180	303,540	402,600

주택가격 납부방법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납부비용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가격	20%	20%	60% (주택도시기금 포함)
발코니확장비용	20%	—	80%

■ 납부기한

구 분	납부기한
계약금	2020.09.14.(월) ~ 2020.09.16.(수)
중도금	2020.11.30.(월)
잔금	2021.04.16.(금)
입주지정기간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 2021.02.15.(월) ~ 2021.04.16.(금)

-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중도금은 납부기한(잔금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연3%(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며,(입금금액과 함께 가산납부 처리) 주택가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미납분에 대해 연체한 일수에 대해 연6.5%의 연체료가 가산됨(현행,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납할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거래신고(계약체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문의가능하며, 공사에 사전 확인 없이 납부한 금원 및 처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선납할인 금액은 예정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고,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주택도시기금(용자금)은 선납할인 없음.**
- **잔금(발코니확장 잔금 등)과 주택도시기금의 입금계좌는 다르며, 주택도시기금의 대환 또는 일시상환에 대한 안내문을 잔금 납부시기에 발송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선납기간에 납부한 중도금, 잔금(발코니확장 잔금포함)은 입금 즉시 선납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반환청구가 불가하오니 선납기간에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요망**
 - ※ 잔금(발코니확장잔금 포함)까지 완납했을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절대 불가하며, 기 납부액의 반환 처리가 불가함.
- **중도금 및 잔금 고지서**는 납부기한일 전에 주택분양계약서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주소변경 및 배달 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분양수납부에 확인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납부금 조회란에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시어** 연체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임.**
 - ※ 중도금 및 잔금 고지서 수령주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공사 분양수납부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fax.02-3410-7514) 하시기 바람.

공사 홈페이지에서 납부금 고지서(중도금 및 잔금고지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우측 “납부금 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아파트 분양금 조회 → 납부내역에서 중도금 등 확인 후 고지서 재발행

- 분양금 과오납 시에는 과오납반환신청서(공사 분양수납부 비치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계약자 통장사본 1부를

분양수납부로 제출(fax.02-3410-7514)하시기 바람.

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과오납신청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고객센터 → SH자료실 → “반환청구 및 계좌입금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휴일(토,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하시고자 하는 세대는 당일 현장(본사 및 관리사무소) 수납이 불가하오니 금요일(공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완납하시거나, 입주당일에 가상계좌 입금(이체한도 증액조정 등 관련사항 체크 요망) 후 이체확인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하여 주말에 입주하는 세대는 반드시 입주 전(평일)에 대출실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고객센터 → 증명서 신청 → 3. 주택분양금 납부내역서 바로가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 본인 명의의 주택선택 후 신청하기 → 담당자의 승인 후 출력 (담당자 승인 후 24시간 이내, 담당자 승인결과는 문자로 발송됨)

■ 분양주택 납부내역서는 대출, 입주, 취득세 신고 등 납부내역 증빙용 서류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 발급 가능

※ 계약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계약이후 가능

4

입주자에 대한 융자(주택도시기금)지원 내용

- 주택가격 중 잔금에는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 주택도시기금을 입주(열쇠수령) 전까지 일시상환 또는 대환이 실행되어야 입주 가능.
- 주택도시기금을 납부기한(2021.04.16.)까지 대환 또는 일시상환하지 않을 시 아래의 대환전 적용이율(연3.1%)로 주택도시기금 이자(월부금)가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가산됨.
- 주택도시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융자액이 변동되거나 지원이 없을 수 있음.
- 금회 공급하는 전용면적 59㎡이하 분양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주택으로 세대별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잔금의 일부로 대체가능하며, 대환(대출)시 상환 조건은 대환일부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함.
-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 변경)일 전날까지는 공사에서 차입한 이율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고 대환일에 입주자가 융자금을 승계하며, 대환일 이후 적용이율은 연 2.8%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됨. (정확한 이율은 차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환하실 은행에 문의 요망)]
- | 지구 | 전용면적
(㎡) | 대출금액
(천원) | 대 환 전
적용이율 | 대 환 후
적용이율 | 상환조건 | 상환(대환)기한 | |
|------|-------------|--------------|---------------|---------------|-----------------|---|--|
| 고덕강일 | 8단지
14단지 | 49, 59 | 55,000 | 연 3.1% | 연2.8%
(변동금리)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소유권보존등기일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비교하여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 ※ 2020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융자 이율 등 조건이 변경 될 수 있음
- ※ 주택가격 및 대출(대환)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대출금리 적용 가능
- ※ 주택도시기금을 일시 상환하시는 경우 디딤돌대출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홈페이지 참조 http://nhuf.molit.go.kr)
- 잔금에 포함된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은 일시상환 또는 대환(대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1. 일시 상환하는 경우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융자금) 대출을 원하지 않고 일시상환 할 경우에는 아래 해당은행의 상환계좌로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열쇠수령)하기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환계좌에 입금된 주택도시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도시기금대출금 상환에 충당되므로 금액을 초과 또는 부족하게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일시상환 후 재대출은 불가함.
- 주택도시기금 일시상환 은행 및 계좌번호 (8,14단지 공통)
- 우리은행 1005-883-200511 (예금주 :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금융센터)
-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은 선납할인이 없음.
- 상기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상환되지 않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수분양자가 토,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할 경우 입주 전 평일(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까지)에 주택도시기금을 일시상환 하여야만 월부금(주택도시기금 이자)이

- 발생하지 않음.
- 입주일 까지 일시상환하지 않는 경우나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변경)일 전날까지 주택도시기금 이자(월부금)가 가산됨.
- 주택도시기금 상환(납부)기한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또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시행 시 안내) 다음날부터 연체료가 가산됨.

2. 대환(대출)받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융자는 계약자(명의변경자) 앞으로 대출되어 잔금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대환(대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우리은행에 직접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고 은행에서 공사로 승인통보를 하였을 경우에 대출이 가능함. (대출문의 :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융센터 ☎02-3412-4681)
- 주택도시기금 대환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대환)승인 전 세입자가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
-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전세자금)대출 기보유자 등
- 주택도시기금 이자(월부금) 납부안내
-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일시상환 또는 대환(대출)승인 전일(또는 주택도시기금상환 종료기한)까지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자가 월부금으로 부과되어 매월 20~25일경 분양받으신 물건지로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며, 매월말일이 납부기한임.(현행, 변경가능)
- 계약자는 주택가격에 포함된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을 건물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에 대한 차주명의(借主名義)를 변경하거나 융자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개시 약 2주전에 주택도시기금 융자(대출)에 관해 별도 안내문을 계약서상 주소지 또는 주소변경 신청한 주소지로 발송예정임.
- 주택도시기금(융자금)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5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공통사항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초본 기준)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외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른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으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 적용대상 : 일반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기준일	지역우선공급비율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해당	수도권	해당	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6.02.)	50%	50%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2018.06.03. 이후 서울특별시 전입자(2년 미만 거주자)는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서울특별시

- 2년이상 계속 거주자)에 배정함
-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고덕강일 8단지 또는 14단지에 청약신청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 각각 청약/1인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 불가
 -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됨
 - －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됨
- ※ 무효 예시) 신청자 본인이 고덕강일 8단지, 14단지 중복청약 시 신청무효
- ※ 부적격 예시) 신청자는 8단지 청약 배우자(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는 14단지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동일단지 내에서 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단지의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 또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
 -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신청 대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급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 당첨사실 등 청약제한사항 조회 방법 〉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거나, 대표신청자가 세대원의 동의를 거쳐 등록한 후 통합조회 가능함
-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이 재건축 · 재개발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관할 시 · 군 ·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단, 청약자 본인에 한하며, 조회일 직전 영업일까지 한국감정원에서 전산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당첨사실만 조회 가능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급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원의 구성요건 확인은 제2조 제2의3호,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게시 : 2020.08.31.(월) 17:00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공사 홈페이지 → 화면 중앙 [분양] → 주택소유현황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확인)
- 적용대상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기타 기관추천 등) 신청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공급신청 자격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에 포함

-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 1. 주택공급신청자
-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및 분양권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자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판정)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봄.
 - 20제곱미터는 해당 주택의 전체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소유자별 공유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민원회신문(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물임을 확인)을 받아야 인정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된 연면적 200㎡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됨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 시 유의하시기 바람
 - 9.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공급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함.
 - ※ 예시) 세대주의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세대원인 부모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임.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공급신청자가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함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검토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유형별 세부 소득적용기준 및 자산보유기준은 아래 <표2>, <표3>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기준 아래 <표2>의 소득적용 기준 및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공급신청자의 자산보유 및 소득금액 적용

-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의 검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 확인한 보유자산 및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당사자의 자산 및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함
- 항후 소득 및 자산 검색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함. 만일 부적격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적자료를 보유한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 공급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 현황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조사대상자의 의무

- 공사가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전원의 자산 · 소득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함

<표2> 소득적용 기준

- 소득기준 검증은 당첨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조사대상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상시 · 일용 · 자활 · 공공), 사업소득(농업 · 임업 · 어업 · 기타), 재산소득(임대 · 이자 ·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금회 공급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가 적용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함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655,729원) 추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가구원수 산정 기준

구 분	가구원수 산정 기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및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인 자 전원의 소득을 합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전 세대원의 합산소득이며 공급신청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만19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도 합산함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 · 초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소득금액 조사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세대구성원 등)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표의 상시근로 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건강보험공단 → ② 국민연금공단 → ③ 근로복지공단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이 있음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건강보험공단 ② 국민연금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우측에 기재된 수당 이외에도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수당 중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음 ※ 아동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한국고용정보원 : 실업급여 별정우체국연관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군인연금 : 국방부퇴직연금급여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 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보상급여등

■ 부적격자 소명 안내

- － 소득조사 결과 기준초과로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자료 제공기관(위 표의 “소득자료 출처”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반드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표3〉자산[부동산(토지+건물)·자동차] 보유 기준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 공유 시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 자산도 합산함
-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

적용대상	자산보유기준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물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구분		가액산정기준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 건물	공장, 상가 (오피스텔)	건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자동차는「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방법

- 방 문 확 인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취 · 등록세 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9년식 자동차를 2018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93	48	45
고덕강일지구	8단지	049,0000H	15	8	7
		059,0000H	37	19	18
고덕강일지구	14단지	049,0000H	13	7	6
		059,0000H	28	14	14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1.06.03. 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해당 분양주택의 입주가 촉박하여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불법낙태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함)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 (〈표2〉 소득적용 기준 참고)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자산[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고덕강일지구 8단지와 14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단지이므로 중복청약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 · 항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동일단지 내에서 다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 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배점기준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14.06.03. 이후 출생)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5)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계산 시 제외함
 -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 위 1,2에 해당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4) 산정 : 만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신청자 및 배우자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 해당 시 · 도 거주기간(5) 산정 :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해당 시 · 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29	15	14
고덕강일지구	8단지	049,0000H	4	2	2
		059,0000H	12	6	6
고덕강일지구	14단지	049,0000H	3	2	1
		059,0000H	10	5	5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1955.06.02. 이전출생)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사실이 없을 것
 - ④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모(母)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음)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표2〉 소득적용 기준 참고)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자산[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고덕강일지구 8단지와 14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단지이므로 중복청약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분양 “〈표4〉 동일분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동일단지 내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 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280	141	139
고덕강일지구	8단지	049,0000H	110	55
		059,0000H	47	24
고덕강일지구	14단지	049,0000H	92	46
		059,0000H	31	16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로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고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가입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하며, 미증빙 시 계약이 해제되고 입주 불가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분(〈표2〉 소득적용 기준 참고)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할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자산[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고덕강일지구 8단지와 14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단지이므로 중복청약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분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018.12.10.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로 확인함
-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하위임신, 불법낙태, 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불법낙태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함**)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함.**
-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 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해당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항목		기준	비고
가. 가구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퍼센트)이하인 경우: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가점선택 불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 **자녀의 수 산정방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산한(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미성년 자녀를 말함
 -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를 인정함(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 현재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계산 시 제외함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3. 위 1,2에 해당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소득 가점기준**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4,443,986	4,981,074	5,550,683	6,075,266	6,599,850	7,124,43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동일단지 내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 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186	93	93
고덕강일지구	8단지	049,0000H	62	31	31
		059,0000H	42	21	21
덕강일지구	14단지	049,0000H	50	25	25
		059,0000H	32	16	16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⑦)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사실이 없을 것**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 미혼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음(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음)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을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되는 소득자료를 적용함.
-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분(〈표2〉 소득적용 기준 참고)

(단위 :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⑦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자산(부동산(토지+건물)·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고덕강일지구 8단지와 14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단지이므로 중복청약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동일단지 내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기타 특별공급

1.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특별공급은 미적용)
 - 추천기관 현황(예시)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장애인(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의사상자(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다문화가족(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 중 신청기간(2020.06.15.~06.16)에 청약신청한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후 무주택 여부,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을 심사하여 적격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함.
 - ※ 선정자는 반드시 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체결 불가
 - ※ 해당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도 청약신청을 하여야 기관추천 예비자로 확정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추천기관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어 공사에 통보된 분만 청약신청 가능하고, 각 기관의 선정기준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함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개별선정기준에 관여하지 않음)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법정기한 경과 후 선착순 분양의 방법으로 분양함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기관추천 예비자 및 다른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의 낙첨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2. 철거민 특별공급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부서에서 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정되신 분

■ **유의사항(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세대에 속한 자 모두 무주택)**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세대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상기 특별공급 횟수제한, 재당첨제한 등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보상부서에서 확정한 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대상자, 특별공급대상자 중 8, 14단지를 배정받은 분으로 **신청기간(2020.06.15.~06.16)에 청약신청한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후 무주택 여부, 청약 제한사항을 심사(이주대책대상자 제외)하여 적격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함.**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포기처리 함

※ 배정된 단지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외처리됨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법정기한 경과 후 선착순 분양의 방법으로 분양함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의 낙첨자 및 기관추천 예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고덕강일지구 8단지와 14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단지이므로 중복청약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1순위 청약제한사항에 해당되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며 2순위로 청약 가능함 (자격제한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해당지역 · 수도권지역)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2순위(해당지역 · 수도권지역)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후에는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날 추가접수 받지 않음
 - ※ 1순위자가 2순위 신청일에 접수할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접수됨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르고, 1순위 내 동일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 각각 신청, 부부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 하시기 바람
- 규칙 제2조의 세대원 정의에 따라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있어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간주함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에 한함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며, 통장사용 불가

〈표4〉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공급신청자가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폐기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는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선정하며,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의 사유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예비입주자에 대한 동 · 호수 배정은 미계약 동호를 대상으로 사업주체의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예비입주자는 공사 분양수납부로 방문하시거나 서면의 방법으로 신청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 본인의 책임이며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규칙에 따라 추후 모집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 특별공급 당첨 세대 중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세대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소진 후에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유형(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기관추천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예비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순번을 결정하여 특별공급 통합 예비순번으로 부여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4〉「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선정함.

7 중복청약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고덕강일지구 8단지 또는 14단지 신청 시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청약,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자 본인이 고덕강일지구 8단지 또는 14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음)에 중복 청약한 경우 무효 처리되며,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동시에 청약 불가

※ 동일세대구성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다른주택(당첨자발표일이 다름)에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당첨된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첨 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동일단지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또한,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불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이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세대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민 당첨자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 신청자 1인이 동일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모두 신청한 경우로서 특별공급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신청 · 계약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위조 등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도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입주자저축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을 신청 · 계약한 경우
- 서류결격 또는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주택공급관련법령에 위배될 경우
- ※ **입주자저축 양수 · 양도 등 주택법(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시 당첨자로 관리되며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함**
-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로(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전산관리되고 해당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부적격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8 신청일정 및 장소

최하층 우선배정 (노약자 · 장애인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3명 이상)에 한함)

-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 **금회 분양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나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①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 배정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선택하여주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고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3층인 주택이 있음**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와 ③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최하층 배정을 신청할 경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에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자격입증서류 : ①,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일자	신청장소	신청방법
특별 공급	기관추천, 철거민	2020.06.15.(월) ~ 16.(화)	－ 한국감정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서비스(청약홈 APP 설치)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청약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08:00~17:30)
	다자녀 특별공급	2020.06.1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20.06.16.(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 공급	1순위	2020.06.19.(금)		
	2순위	2020.06.22.(월)		

- 상기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하며, 공급구분별 · 순위별 신청일자 외에는 신청할 수 없음. (순위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은 접수건수가 공급세대수를 미달하더라도 다음날 접수받지 않음.
- 일반공급 1순위 신청접수 결과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2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후에는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의

- 60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날 추가접수 받지 않음
- 청약접수 경쟁률 및 청약마감여부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의 ‘공고 및 공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 경쟁률】에 각 순위접수 당일 21:00 이후에 게시되며,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9. 신청방법」참조

9 신청방법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다만, 신청 당일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나 정정 시 예외)**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여부, 신청순위,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재당첨제한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신청접수일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인터넷 신청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이용]

- 주택 청약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청은 받지 않음**
- **금회 공급 단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을 공사에서 받지 않으며,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이용하셔야 함**

- **신청시간**

인터넷 청약시간 (특별, 일반공급)	08:00~17:30 (해당일에 한함)
---------------------	-----------------------

-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신청방법**

-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청약하시기 바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청약신청일 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공인인증서는 6대 인종기관(한국감정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 ※ 최근 공인인증서 외 타 수단이 사용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이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반영 예정이므로 공인인증서 외의 수단은 이용이 불가능함

신청방법 및 절차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하기 → 아파트
	※ 모바일서비스에서도 신청 가능(청약홈 APP 설치)
신청시간	－ 08:00~17:30
	※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 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완료 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공급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해당지역여부, 신청순위, 무주택여부 및 기간, 재당첨제한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하여 공사에서 확인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명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가입한 은행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입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홈을 이용한 청약의 경우 순위확인서의 별도 발급은 필요하지 않으나 인터넷으로 순위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 조회방법

조회방법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은행창구 청약신청 [일반분양 신청자중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불가자]

- **신청시간** : 창구청약 가능시간은 09:00~16:00이며, 일반분양 신청자중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은행 창구에서 방문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장소** : 청약통장 가입은행
 - **구비서류** : 아래 필요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본인 신청 시	①주택공급신청서	청약장소 양식비치
	②청약통장	
	③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④본인 주민등록증	
추가 구비서류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임. (배우자 포함)	①위임장	청약장소 양식비치
	②본인(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③본인(청약자) 인감도장	
	④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공사에서 확인함.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문 공고나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공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10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당첨자는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 확인서류를 비교하여 적격확인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 **적격 당첨자 계약체결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계약체결기간
• 일시 : 2020.06.26.(금) 17:00 이후 • 장소 :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서비스(청약홈 APP 설치)	2020.06.30.(화)~07.02.(목) 접수방법 : 우편접수	2020.09.14.(월)~09.16.(수) (09:30~17:30)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발표장소(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문의 전화에는 개별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공사 홈페이지에 함께 발표됨
- 상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계약체결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첨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인 터 넷 확인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청약정보 → 대상자 조회 →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제공일시 : 2020.06.26.(금) 17:00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조회하기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조회
	※ 제공일시 : 2020.06.26.~07.05.(10일간)
	※ 모바일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청약홈 APP 설치)

구 분	확 인 방 법
전화(ARS)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5 → 2 주민등록번호# [제공일시:2020.06.26.(금) 17:00이후]

- ※ **당첨자 명단은 한국감정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간은 **09:30~17:30**이나 적격 당첨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계약금 고지서 수령 후 은행 영업시간(9:00~16:00) 내에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오후 3시 이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람. 특히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0.09.16.(수)**은 계약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계약체결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의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분양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당첨자에게 있으며,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여 적격(정당)당첨자로 확인된 후에 계약체결 가능.
- **계약금(발코니 확장 계약금 포함) 납부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계약금(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만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입주자격)을 취소함.**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등기우편 제출)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2020.06.30.(화)~07.02.(목)]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 미제출시 단순 계약포기로 간주(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서류제출을 통하여 부적격 사유를 입증해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됨.(1년간 당첨제한 등)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 우편접수, 퀵서비스 배달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관련 추가서류 제출은 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예정임.
- 서류발급 시 아래 내용에 따라 발급받으시기 바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세'구분으로 출력하는 서류는 '상세'로 구분을 선택하여 제출**
-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분양수납부 (고덕강일지구 00단지 담당자 앞)**

■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제출대상**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등을 포함하여 발급 ·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는 필수제출 (가점사항 확인용)
		○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제출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서 확인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 14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지역거주요건이 있는 공급대상으로 당첨된 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다 자 녀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
		○	②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③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와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공사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제출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발급 원본 제출 (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예정일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됨 ※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배정기준표 상 가점사항 확인 (해당시도 거주기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로 당첨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료일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 시 까지) 제출 · ‘일반’이 아닌 ‘상세’로 제출
		○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
		○	③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④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일자 확인 필요시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와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공사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제출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발급 원본 제출 (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예정일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됨 ※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
		○	②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신청인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인 이상 세대로 신청인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동일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5〉 참조	본인	· 신청인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
		○	③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
기관추천 및 특별공급 대상자		○	①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2020.06.02.) 이후에 주소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②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②, ③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③제출
		○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
철거민		○	①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①, ②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②제출
		○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

〈표5〉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해 당 자 격	발급 기준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	근로자	본인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영업자	본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본인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납부여부 확인용 서류이며 가구원별 총 소득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심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여부	서류구분	해 당 자 격	발급 기준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본인	·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④ 세무서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시 추가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비고
본인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배우자	① 본인(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②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① 본인(당첨자)이 인감날인한 위임장	신청자 구비
		② 본인(당첨자) 인감증명서	
		③ 본인(당첨자) 인감도장	
		④ 본인(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서명확인 방식	① 본인(당첨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것	※ 위임장은 공사 홈페이지 및 신청장소에 비치
		② 본인(당첨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본인(당첨자) 도장	
		④ 본인(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에 주소변동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
		○		직계존속	
		○	⑤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2007.12.31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의 경우 제출
		○	⑥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⑦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직계존속	
		○	⑧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⑨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⑩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전원 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내 첨부 파일 참조
		○	⑪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공사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 60㎡ 이하 신청자 중 태아 세대구성원 산입 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제출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발급 원본 제출 (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 출산예정일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됨
		○	⑫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지역거주요건이 있는 공급대상으로 당첨된 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 내역이 많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각 출국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지참 ② 계약금 납부영수증(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영수증 포함) 원본 ③ 당첨자 도장(서명 가능)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인감증명 방식	① 당첨자가 인감날인한 위임장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서명확인 방식	①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당첨자 도장 ④ 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1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3급 이상 지체 · 뇌병변 장애인 및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호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림.
- 편의시설 설치는 공정상 2020.09.16.(수)까지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시공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설치가 시작되므로 신청 후 취소나 변경이 절대 불가함.**
- **준공 시까지 설치기간이 촉박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시 해당부분의 시공이 진행 중일 수 있음.**

구분	선택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기성제품 경사로 적용]
	공용욕실	좌변기 안전손잡이[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1개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이용 가능한 높이(1.0~1.2M)]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는 계약 장소에 비치함.

신청 시기	신청시 구비서류
계약 시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 입주자(계약자)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안내

- 입주 후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 방문제도를 실시함.
-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일정

단 지		사전점검 방문일(예정)	입주시작(예정)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	2021.01.09.(토) ~ 2021.01.10.(일)	2021.02.15.(월) ~ 2021.04.16.(금) [기간:60일]

※ **상기 일정은 준공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 담당 부서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관리사무소는 입주개시 14일 전에 개소하며, 입주개시 3일 전부터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세대방문 가능함 (개소 전에 입주개시일 및 상세내용을 개별 안내하며, 상기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 지구 · 주변 여건 및 단지 여건, 기타 유의사항

지구 · 주변 여건 및 단지 여건

지구전체

- 고덕강일지구 기반시설(도로, 방음벽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주 시까지 조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 기반시설은 향후 심의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지구계획(각종 영향평가 포함)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는 소셜스마트시티의 구축으로 거주민 커뮤니티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구이고, 금회 공급단지는 소셜스마트시티 대상단지로 해당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업체 등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도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
- 고덕강일8단지는 북측으로 올림픽대로, 서측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강일IC)가 연결하고 있고 고덕강일14단지는 남측으로 천호대로, 서측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일IC)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덕강일지구에 인접한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차량 소음대책으로 도로변에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예정임
- 고덕강일지구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소음 · 진동 관련기준을 충족토록 계획되었으나, 지구와 주변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등)의 교통량 증가, 차량과속, 하남비행장 운영 등 지구와 주변여건에 따라 발생한 소음이 일시적으로 환경기준치보다 초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민원제기 및 피해보상요구 할 수 없음
- 고덕강일지구 내 · 외 인접지역에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열병합 발전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지하철 5호선 철도시설(하남선 신설공사 포함), 하남비행장 등이 위치 · 계획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입지여건(향후 변경사항 포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대기질 등 환경영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고덕강일지구는 인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8단지

- 고덕강일8단지 반경 2km부근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있으며 추후 강일역 개통예정.
- 고덕강일8단지는 서울도심 남동측 23km 지점, 서울시와 하남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3,5블럭 공사예정으로 인한 비산먼지, 경보음, 야간 차량 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고덕강일8단지 외 기반시설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주 시 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덕강일8단지 외 기반시설은 향후 심의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지구계획(각종 영향평가 포함)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소음 등 각종 환경저해 관련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고덕강일지구 내 교통의 결절 지점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음.
- 고덕강일지구 기반시설(도로, 방음벽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주 시까지 조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 기반시설은 향후 심의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 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이용 안내

지구단지	학교	학교명	위치	관할교육청
고덕강일 8단지	초등학교(3)	강빛초,중학교 [가칭,통합학교]	강동구 강일동 120-4 일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2-3434-4483(초등학교)
	중학교(1)		강동구 강일동 121-3	☎ 02-3434-4482(중학교) ☎ 02-1396(서울교육콜센터)

※ 학군정보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전 · 편입학 및 재취학안내 → 학교군별 소속지역 안내

※ 위 배정학교는 본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최종 확인하시기 바라며 중학교는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됨.

- 고덕강일8단지는 북측으로 올림픽대로, 서측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강일IC)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덕강일지구에 인접한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차량 소음대책으로 도로변에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예정임.
- 고덕강일지구 내외 인접지역에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열병합 발전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지하철 5호선 철도시설(하남선 신설공사 포함), 하남비행장 등이 위치 · 계획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입지여건 (향후 변경사항 포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대기질 등 환경영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단지

- 고덕강일 14단지는 상일C에서 0.3km, 상일동역(5호선)에서 1.4km반경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하남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
- 13단지 공사진행에 따른 소음,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곽 하남시쪽 북동측에 공사 미진행 필지가 있으며 해당 필지에 건축 착공시 건설공사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환경권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일C)가 인접하여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방음벽 설치시점 미정으로 입주 시기까지 설치 완료되지 못할 수 있으며, 교통 여건 등에 의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측으로 하남시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9단지, 11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 출,퇴근시간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됨.
- 단지 남측으로 황산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등에 의한 매연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4단지 동측에 하우스D 엘타워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동은 사생활침해 및 소음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14단지 외 기반시설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주 시 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주변단지(12, 13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반시설은 향후 심의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지구계획(각종 영향평가 포함)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소음 등 각종 환경저해 관련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남시와 경계에 위치해 있어 단지주변 민원발생시 발생위치에 따라 소관부서가 다를 수 있음.(강동구청, 하남시청)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이용 안내

지구단지	학교	학교명	위치	관할교육청
고덕강일 14단지	초등학교(1)	강현초등학교 (가칭)	강동구 강일동 산22-101 일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2-3434-4483(초등학교) ☎ 02-3434-4482(중학교) ☎ 02-1396(서울교육콜센터)
	중학교(1)	강현중학교 (가칭)	강동구 강일동 473-4 일원	

※ 학군정보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전 · 편입학 및 재취학안내→학교군별 소속지역 안내
※ 입주시기 , 개교 여부 등에 따라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람.

8단지 각 동 및 공용부위

- 금회 공급되는 고덕강일8단지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이 혼재된 혼합단지(Social Mix)로, 801동, 802동은 장기전세, 808동, 809동, 810동은 국민임대, 803동, 804동, 805동, 806동, 811동, 812동은 공공분양, 807동은 공공분양과 국민임대가 한 동에 함께 배치되어 있음.
- 804동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농기구보관소 및 808동 지상1층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북카페포함), 맘스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동에 비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807동 지상1층에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및 805동 지상1층 공유주방, 809동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과 사회적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동에 비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807동과 808동 사이, 806동과 810동 사이, 802동과 804동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807동과 808동 사이 유아놀이터가 있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809동, 810동, 811동, 812동 북측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801동 주차장/종교시설용지가 계획되어 건설 예정이므로 저층세대는 상가(주차장포함) 이용에 따라 사생활침해, 소음 등 생활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804동 경로당,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807동 주민운동시설, 808동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의 옥상바닥 노출구간으로 미관저해 요소가 있음
- 전동 하부 일부에 1~2개 층의 필로티 설치구간은 소음, 사생활 침해, 사생활 간접 등으로 생활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저층세대 및 인접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덕강일8단지 공공주택은 철근콘크리트 중공슬라브 무량판구조로, 내부에 기둥과 마감이 돌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영역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기둥이 동일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 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재질, 조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기구, 운동기구 등 조경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물(한전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809동, 810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지상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이삿짐 차량은 비상차량 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 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층부(1,2층) 세대의 경우 조경식재, 시설물 등으로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아파트 전실 등에 설치된 소화배관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에 동결 · 동파 방지를 위해 전기 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우수저류조, 인공지반 배수공법이 적용되어 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 의거 계단실 창호를 폐쇄형으로 설치하였으며, 일부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개폐가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의 창호는 자동폐쇄창으로 설치되어 공용부 환기할 수 있는 구조임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최하층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참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각 동별 승강기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부정지층은 정지버튼이 없을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홀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 · 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보안등,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동 및 지상주차장 인접한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통로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지하주차장 입구의 층고가 2,300mm로 대형 SUV차량, 차량 상부 부착물 설치차량, 화물차량, 생계형차량(탑차), 소형버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주,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점포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음
- 비상차량 출입 시 도로 협소에 따른 혼잡이 발생 할 수 있음
- 측면 낙뢰수뢰부 피뢰침 설치 및 돌출로 인한 해당 동 및 세대에 미관저해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주차장은 지상에 20대(근린생활시설 7대 포함), 지하에 876대로 총 896대이며,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은 일반 주차구획[2.3m×5.0m] 496대, 확장형 주차구획[2.5m×5.1m] 289대, 장애인 주차구획[3.3m×5.0m] 28대, 경형 주차구획[2.0m×3.6m] 83대로 설치되어 있고 이중에는 여성전용 일반 주차구획 44대와 여성전용 확장형 주차구획 48대가 포함되어 있음
-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1층 아파트 주동 출입구 근처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
- 계단실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주차된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세대단말기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함
- 지상파 TV(FM)공청 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804동 옥상옥탑 지붕층에 설치되어 있음
- 801동, 812동을 제외한 10개동 옥상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일부 4층 이상 세대(국민임대, 장기전세)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관미관 저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외곽에는 생울타리(사철나무) 설치를 계획하였음
-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있으나 화재 시 개방됨

- 단지 내 경비실은 단지 북측 주출입구(809동) 1개소, 주출입구(812동) 1개소 총 2개소가 있음
-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방법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옥상출입구포함),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공동현관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고, 감시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CCTV 설치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설비는 설치위치 환경에 따라 주간과 야간의 화질이 다를 수 있음
- 동 배치 및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량 차이로 건물에 음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외 도로, 녹지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애드벌룬,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함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용(위치)
부대시설	지상주차장	20대(근생 7대 포함)
	지하주차장	876대
	관리사무소	1개소(804동 1층)
	경비실	2개소(단지 주출입구 각 1개소씩)
복리시설	경로당	1개소(804동 1층)
	어린이집	1개소(808동 1층)
	작은도서관/북카페	각 1개소(808동 1층)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	1개소(807동 1층)
	바이크스테이션	2개소(807동 1층, 801동과 802동 사이)
	맘스스테이션	1개소(808동 1층)
	게스트하우스	1개소(804동 1층)
	공유주방	1개소(805동 1층)
	농기구보관소	1개소(804동 1층)
	어린이놀이터	3개소(808동 부근, 806동과 810동 사이, 802동과 804동 사이)
	유아놀이터	1개소(808동 부근)
	근린생활시설	상가 7개소(809동 1층)
	사회적 기업	2개소(809동 1층)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냉난방 실외기 및 배기설비로 인하여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미관저해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804동 1층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게스트하우스)의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동시 상부층 인접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805동 1층 부대시설(공유주방)의 옥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동 및 공유주방 렌지후드 가동시 인접세대에 소음이 및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807동 1층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의 옥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동시 상부층 인접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808동 1층 부대시설(어린이집, 맘스스테이션, 작은도서관)의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동 및 어린이집 주방 렌지후드 가동시 상부층 인접 세대에 소음이 및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809동 1층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사회적기업)의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 상부층 인접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상가 입주자의 업종에 따라 환경적 생활침해를 받을수 있음
- 단지 전체가 주동 일체형 구조로서, 801동, 810동, 811동의 일부 세대는 지하층에 배치된 우수조, Main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의 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물(한전변압기함, 한전스위치패드 등)이 809동/810동(8단지)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아파트 801, 812동을 제외한 전 동 옥상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선을 위한 케이브덕트(또는 배관) 시설이 일부 구간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803동 남측 대지경계부에 고덕강일2지구 전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시설이 설치되어 미관 저해요소가 있을 수 있음
- 옥외에 설치되는 텃밭 수전, 지상부 조경 수전, 옥상조경(808동 및 809동 부대시설 지붕) 수전,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 수전, 쿨링포그 수전 등은 동절기 동파우려가 높으므로 동절기 시작 전 관내 잔수 퇴수조치 등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유의를 요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환 가동 시 환류에 인접한 주차구역은 소음 및 기류형성에 의한 환경저해 요인이 있을 수 있음
- 802동 ~812동 1층은 피난층으로 엘리베이터홀에 방화문 및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4단지 각 동 및 공용부위

- 금회 공급되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4단지는 공공분양,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혼재된 혼합단지(Social Mix)로, 1401동 국민임대, 1402동, 1403동, 1404동, 1405동, 1406동, 1407동은 공공분양, 1408동, 1409동은 행복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음
- 판상형 주동이 변형된 형태와, 기존 지형의 흐름을 존중한 배치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입주민의 접근성을 극대화 함
- 수요자 특성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옥외 운동시설을 분산배치 함
-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안전한 보행공산을 조성함
- 단지 중심 보행동선을 관통하는 차량을 배제하고 보행자우선의 동선이 계획되어있음
- 1401동 1층 사회적기업, 작은도서관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26m도로변에 배치
- 1402동 1층에 어린이집을 배치하고 Drop-off zone, 맘스라운지를 연계하여 어린이 차량 이용시 안전을 고려하였으며, 단지외부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 도로변에 어린이집 배치
- 1403동에 관리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중앙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고려함
- 1404동 1층에 주민운동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을 쉽게 배치함
- 1407동 1층에 경로당, 텃밭, 공유주방을 연계하여 계획 단지 보행자진입부에 배치함으로써 접근성을 고려함
- 1408동 1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 1403동, 근린생활시설에 바이크스테이션을 조성하여 근린생활시설상부에 이벤트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1401동과 1402동 사이, 1404동과 1406동 사이, 그리고 1409동 주변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401동과 1402동 사이, 1407동 인근에 텃밭이 위치하여 단지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물(한전변압기함, 한전스위치패드 등)이 1403동, 1405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미관 저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1408, 1409동을 제외한 전 동 옥상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선을 위한 케이브덕트(또는 배관)시설이 일부 구간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저층세대 및 인접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덕강일 14단지 공공주택은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로, 내부에 기둥과 마감이 돌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영역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기둥이나 보의 위치는 동일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 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재질, 조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기구, 운동기구 등 조정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지상 부분은 녹지 및 보행 공간으로 이삿짐 차량은 비상차량 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 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층부(1,2층) 세대의 경우 조정식재, 시설물 등으로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각 동 계단방화문 및 엘리베이터 방화문의 피난구유도등이 천정마감과 문틀상단과의 공간부족으로 일부 문틀 옆측 으로 설치 되어 있음
- 아파트 복도 등에 설치된 소화배관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에 동결 · 동파 방지를 위해 전기 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우수저류조, 인공지반 배수공법이 적용되어 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최하층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옥외 가스배관 각동입상 최하층세대는 접지시공으로 인한 외관미관 저해가 발생할수 있음.
- 각 동별 승강기 사양이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 · 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동 및 지상주차장 인접한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 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통로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지하주차장 입구의 층고가 2,300mm로 대형 SUV차량, 차량 상부 부착물 설치차량, 화물차량, 생계형차량(택차), 소형버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비상차량 출입 시 도로 협소에 따른 혼잡이 발생 할 수 있음
- 일부 4층 이상 세대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관미관 저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있으나 화재 시 개방됨
- 주차장은 지하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세대 819대, 근린생활시설 4대를 포함하여 총 823대 주차가능
- 자전거 주차 대수는 바이크스테이션을 포함하여 지하84대, 지상 246대로 총 330대 주차가능
- 지하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주차된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간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도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지상파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1403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음
- 일부 세대(국민임대)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관미관 저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외곽에는 생울타리(사철나무) 설치를 계획하였음
- 단지 내 경비실은 단지 남동측 주출입구 1개소와 남서측 부출입구 1개소 총2개소가 있음
-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용(위치)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823대
	관리사무소	1개소(1403동 1층)
	경비실	2개소(단지 주출입구 1개소씩)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1개소(단지주출입구 부근)
	어린이놀이터	3개소(1401동과 1402동 사이, 1404동과 1406동 사이, 1408동 1409동사이)
	유아놀이터	1개소(1401동과 1402동 사이)
	보육시설	1개소(1402동)
	경로당	1개소(1407동 1층)
	커뮤니티공간	1개소(1403동 1405동 사이)
	주민운동시설	3개소(1401동과 1402동 사이, 1404동과 1406동 사이, 1404동 1층)
	맘스테이션	1403동
	게스트하우스	1403동 1개소

- 방법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장소에 설치된 CCTV용 카메라 설비는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야간의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냉난방 실외기 및 배기설비 가동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미관저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전체가 주동 일체형 구조로서, 1401동, 1403동, 1404동 ,1405동 ,1407동 ,1409동의 일부 세대는 지하층에 배치된 우수조, Main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의 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동 배치 및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량 차이로 건물에 음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외 도로, 녹지과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 (광고탑, 애드벌룬,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함
- 옥외에 설치되는 텃밭 수전, 지상부 조정 수전,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 수전, 쿨링포그 수전 등은 동절기 동파우려가 높으므로 동절기 시작 전 관내 잔수 퇴수조치 등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유의를 요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첸 가동시 첸룸에 인접한 주차구역은 소음 및 기류형성에 의한 환경저해 요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아파트 1층은 피난층으로 엘리베이터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복도형(1401,1402,1403,1408,1409동) 아파트 최상층 일부 세대는 화재 및 소방시설 점검 시 제연설비 배기 Fan작동에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형(1401,1402,1403,1408,1409동) 아파트 복도 부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함의 8cm 노출로 의해 복도 통로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 단위세대(공통)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수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여건에 따라 발코니에 기둥이나 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천장마감 부위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 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일부 발코니 폭이 협소하여 다른 기능으로 사용 시 불편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면적 및 설치위치 등 평면상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설비 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타입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 수 있음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59타입의 단위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설비 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소음 및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49타입은 자연환기가 적용됨
 - 타입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시스템은 장비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에 차이가 있음
 - **최상층 발코니 또는 외부에 접하는 발코니 천정은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천정고가 낮은 세대가 있음**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노출로 설치된 환기장비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시공된 우수관 및 배수관이 시공상 오차 및 하부층, 최상층 통기관 설치 등으로 인하여 세대별로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세탁기 수전과 간섭 시 수전방향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우수, 배수 선홍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철근콘크리트 중공슬라브 무량판구조로, 내부에 기둥과 마감이 돌출될 수 있고, 서비스영역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기둥이 동일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면적이 세대별로 소폭 상이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발코니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 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 때 음식조리, 빨래건조, 가슴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유의해야함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 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세대분전반과 통신 통합단자함은 신발장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서비스 장비설치 및 누전차단기 작동점검 시, 신발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함
 - 59타입 세대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59타입의 단위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설비 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타입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49 타입은 자연환기 SYSTEM 적용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코니에 실외기(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근접 계획)를 설치해야 하며(중문 미설치, 외부 설치공간 미제공), 에어컨 실외기 작동 시 외부 창호(루버 또는 그릴창호)를 개방 후 사용해야 하고 소음, 진동이 세대내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조망권,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 그릴의 단차에 의해 하부에 실외기 높임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세대내 공간을 실측하여 확인 후 설치해야함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드레인 배수관(물빠짐)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설치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 침실 확장부분 및 일부 발코니 내부 마감선이 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대피공간은 8단지만 해당)**
- 세대 현관문의 개폐방향은 피난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부위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주방가구의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및 에어컨설치기 등의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세대 발코니에 드럼세탁기 설치 시 내경 협소로 배치조정이 필요하니 사전에 반드시 실체크기를 확인해야함
- 일부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등은 벽부형 또는 천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음
- 세대내 동체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됨
- 세대 내외부에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타일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 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면적 및 설치위치 등 평면상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8단지만 해당)**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8단지만 해당)**
- 사용검사승인 이전에 구조변경 등은 불가하며,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임의변경(발코니 확장 등)할 경우, 이로 인한 구조적 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아파트 단위세대 난방 및 급탕은 지역난방을 이용하여 공급됨
- 건물 옥상에 주방공용배기시스템방식으로 적용되어 세대별 주방배기팬은 없음
- 거실 아트월부분의 경우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벽걸이 TV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
- 49A타입 펜트리 수납장 시스템가구 설치로 유모차, 자전거 등 물품에 대한 반입이 어려울 수 있음(폭(W)=600) **(14단지만 해당)**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최종 마감재(타일, 바닥재, 벽지 등)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화장실 천장 윗 부분은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상하부,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측면,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는 경량콘크리트벽체로 시공되어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관이 시공상에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전·후면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관이 시공상에 오차 및 하부층, 최상층에 따라 통기관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기 수전과 간접 시 수전 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불규칙 및 과다하게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흡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대피공간은 8단지만 해당)**
- 본 아파트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층간소음, 진동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녹색건축인증관련 자체평가표의 세부내용은 예비인증에서 본인증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또는 측면)으로 지나갈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문짝(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시스템선반, 세탁실선반 등)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내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 시는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입주 초기에는 공사시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창호형태는 실제 시공 시 제작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된 플라스틱 창호 사용 시 심한 충격을 반복해서 가할시 변형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 하부에 기계실, 펌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급수, 급탕분배기는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욕실 천장내부 및 주방 등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내시경홀이 설치됨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 구매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매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욕상,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설계도면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의 합, 기타공용면적의 합, 계약면적 등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대지면적도 준공 시 확정측량 및 공부상 절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준공 시 발생하는 다소의 면적 차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상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난방 및 급탕 공급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주방에 가스공급은 도시가스로 공급됨
- 세대의 전기, 급수, 급탕, 난방, 가스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임
-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계단식 아파트는 발코니에,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에 설치 됨.
- 세대 바닥 난방 및 급탕은 지역난방 공급되어 열요금에 사용량에 따라 세대별 사용요금이 발생됨
- 세대주방 렌지후드는 공용배기시스템(렌지후드에 배기팬이 설치되지 않음)이 적용되어, 최상층 세대는 옥상에 설치되는 주방공용배기팬 작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렌지후드용(일체형) 콘센트 보수 시 렌지후드를 분리하여야 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난방열량계 및 급수, 급탕, 가스 미터기는 원격검침용으로 설치됨
- 난방 적산열량계, 급수미터기, 급탕미터기는 복도 및 전실(PD내)에 설치되어 유지관리 및 소음발생으로 생활불편이 발생 할 수 있음
- 49타입은 급수, 급탕, 난방 배관용 점검구가 복도 벽체에, 59타입은 엘리베이터 전실 PD에 설치되어 공용설비 유지관리 및 미관저해, 소음발생에 따른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 최하층 승강기홀에 설치된

- 제습기를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제습기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및 복도에 설치되고, 복도식아파트 경우 최하층부 복도에 대구경 가스 횡주관이 설치 되어, 일부 세대의 경우 출입문 및 창문 상단부로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음
- 복도형 아파트 복도면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클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각 동별 승강기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부정지층은 정지버튼이 없을 수 있음
- 복도 우수배관 설치로 우천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아파트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설비, 각종기계 환기장치 등의 장비 가동에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욕조설치 최하층 세대 중 필로티구간 일부 세대는 유지관리상 트랩이 설치되지 않아 냄새가 역류할 수 있으므로, 욕조 미 사용 시에는 욕조마개로 막아서 냄새를 역류방지하여야 하는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복도형 아파트 최상층 일부 세대는 화재 및 소방시설 점검 시 제연 설비 배기 Fan 작동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형 아파트 복도 부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함의 노출로 인해 복도 통로 폭이 축소되어 통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지구 내· 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등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정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건본주택운영기간,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내에 출입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함)
- 팸플릿상 평면도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사이버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주택 계약자의 경우 분양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하층 희망자가 최하층 분양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신청자도 최하층에 배정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대피공간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키, 오타자가 있을 수 있음 **(대피공간은 8단지만 해당)**
- 팸플릿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전용면적별 대표 타입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시설마감은 자재품질, 제조회사 도산,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인허가 관청의 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시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며, 동일 단지 내 동일한 평면유형이라 할지라도 색상과 형태가 다소 다를 수 있음
- 건본세대 및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동, 호수에 대하여는 도배, 마루, 가구문짝, 가구손잡이, 도장에 대해 재시공할 예정이며 상기 품목 이외에 대하여 교체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및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등의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설치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침실 불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등)는 색상, 모양, 규격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는 모양, 규격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소관 업무로써, 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중계기 미설치로 인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명칭은 “강동 리버스트”(8단지), “강동 리엔파크”(14단지) 예정이고, 입주자는 시공사 브랜드의 사용을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으며, 동번호는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 질 수 있음
- 결로방지를 위하여 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제습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지붕층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조명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경비실로 인해 일부세대는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의 동· 호수는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므로 신청인이 주택의 방향, 평면 배치 등 아파트 배치구조와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이후부터는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입주예정자가 납부해야 함
- 신청 및 계약 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입주금(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용 포함)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하여 열쇠불출이 불가함. 또한,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열쇠불출이 불가함
- 잔금은 은행에서만 수납이 가능하며 관리사무소 및 주거복지센터에는 납부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하자관련 문의 및 하자접수는 입주지원센터 내 하자상담실(운영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및 하자119센터(운영기간:입주지원센터 종료 후 6개월)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후 하자접수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짐(단지어건에 따라 운영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지원센터 및 하자119센터 등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단지 내 공용공간(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운영되며, 운영기간 중 장소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은 청구 할 수 없음
- 고덕강일 8단지 및 14단지는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우수 친환경 건축물로 예비 인증되었음
- 고덕강일 8단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건축법 55조(건축물의 견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치)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에 대하여 완화 적용함
- 외국인인 토지를 취득할 경우
 -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주택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 －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주택가격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세는 계약자가 잔금 납부일과 건물(임시)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구청에 분양계약서와 분양금납부확인서를 지참하시어 자진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함
- 공유대지 지분등기는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확정시 공유대지 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점 이후 공유대지지분 등기시까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주소변경요청이라는 제목과 해당 주택 동, 호수, 연락처를 부기 기재하시어 팩스(02-3410-7514)송부하여 주시면 변경된 주소로 공유대지지분 이전등기 안내문을 발송해 드림
- 건물보존등기 완료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2주 이내 등기소에 신청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2~6주 후에 완료됨. 일부 대출상품은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실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잔금납부 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람
- 지구 내· 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등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소음 등 각종 환경저해 관련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교부신청은 우리공사 명의의 건물보존등기 접수 후에 발송하는 건물등기안내문을 수령한 후에 방문신청하시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교부는 건물보존등기가 완료된 후에 교부할 수 있음.
 - 토지보존등기는 전체 사업지구가 준공(택지조성사업 준공)된 후 가능하므로 사업지구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 토지등기가 입주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1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아래 공시내역은 실제 분양가격 기준으로 작성됨

(단위 : 천원)

항목		세분류	고덕강일지구 8단지		고덕강일지구 14단지	
			총금액	(공급면적㎡당)	총금액	(공급면적㎡당)
택지비 (4개)		택지공급가격	112,217,625	2,667	94,031,841	2,884
		기간이자	15,388,713	366	11,956,778	367
		필요적경비	—	—	—	—
		그밖의비용	3,815,788	90	3,120,673	96
		택지비 계	131,422,126	3,123	109,109,292	3,347
공사비 (51개)	토목 13개)	조경공사	1,666,890	40	1,770,975	54
		토공사	685,151	16	743,760	23
		흙막이공사	529,293	13	806,044	25
		비탈면보호공사	—	—	—	—
		옹벽공사	—	—	—	—
		석축공사	—	—	22,437	1
		우오수공사	253,734	6	249,867	8
		공동구공사	—	—	—	—
		지하저수조및급수공사	—	—	—	—
		도로포장공사	271,485	6	208,349	6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
		부대시설공사	40,529	1	24,875	1
		소계	3,447,082	82	3,826,307	118
	건축 (23개)	공동가설공사	2,219,270	53	1,486,870	46
		가시설물공사	1,253,826	30	1,032,548	32
		지정및기초공사	2,922,150	69	2,003,996	61
		철골공사	—	—	—	—
		철근콘크리트공사	17,150,526	408	14,835,419	455
		융접공사	—	—	—	—
		조적공사	2,849,472	68	1,742,288	53
		미장공사	1,064,842	25	817,309	25
		단열공사	1,979,640	47	466,076	14

항목		세분류	고덕강일지구 8단지		고덕강일지구 14단지		
			총금액	(공급면적㎡당)	총금액	(공급면적㎡당)	
		방수.방습공사	1,982,559	47	1,131,685	35	
		목공사	258,918	6	52,998	2	
		가구공사	322,991	8	449,898	14	
		금속공사	1,925,094	46	1,341,843	41	
		지붕밋흙통공사	164,194	4	112,318	3	
		창호공사	3,392,738	81	2,156,954	66	
		유리공사	783,787	19	445,941	14	
		타일공사	783,756	19	515,780	16	
		돌공사	983,121	23	652,942	20	
		도장공사	1,477,974	35	980,099	30	
		도배공사	635,483	15	488,400	15	
		수장공사	1,363,653	32	2,267,776	70	
		주방용구공사	1,015,710	24	925,803	28	
		잡공사	2,156,743	51	1,627,546	50	
		소계	46,686,447	1,110	35,534,489	1,090	
		기계 설비 (9개)	급수설비공사	814,856	19	636,952	19
			급탕설비공사	736,343	18	537,960	16
			오배수설비공사	1,701,063	40	1,682,422	52
			위생기구설비공사	879,222	21	664,020	20
			난방설비공사	2,244,395	53	1,587,268	49
			가스설비공사	468,839	11	422,369	13
			자동제어설비공사	274,064	6	150,807	5
			특수설비공사	993,346	24	745,836	23
			공조설비공사	—	—	—	—
		소계	8,112,128	192	6,427,634	197	
		그밖의 공종 (4개)	승강기공사	1,178,470	28	894,784	27
			전기공사	5,766,508	137	5,134,893	157
			정보통신공사	3,343,112	79	2,921,134	90
			소방설비공사	5,033,151	120	3,834,526	118
			소계	15,321,241	364	12,785,337	392
	그밖의 공사비 (2개)	일반관리비	1,710,191	41	1,626,184	50	
		이윤	690,250	16	594,372	18	
		소계	2,400,441	57	2,220,556	68	
	간접비 (6개)	설계비	1,249,818	30	1,072,228	33	
		감리비	2,748,115	65	2,343,887	72	
		분담금및부담금	1,184,227	28	996,504	30	
그밖의사업비성경비		7,808,577	186	6,250,668	192		
일반분양시설경비		—	—	—	—		
보상비		—	—	—	—		
소계		12,990,737	309	10,663,287	327		
그밖의비용 (1개)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비용	5,182,544	123	4,603,013	141		
건축비 계		94,140,620	2,237	76,060,623	2,333		
분양가격 계		225,562,746	5,360	185,169,915	5,680		

※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구명	비용구분		금액	
			8단지	14단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택지비 가산비	기간이자	15,388,713	11,956,778
		말뚝박기 공사비	3,074,854	2,234,295
		흙막이 및 차수벽	740,934	886,378
		합계	19,204,501	15,077,451
	건축비 가산비	완전무량판구조	3,551,971	2,732,573
		초과설치복리시설	46,250	107,547
		친환경주택건설	345,114	802,601
		인텔리전트설비	1,239,209	960,292
		합계	5,182,544	4,603,013

※ 실제 분양가격에 반영된 가산비 기준으로 작성됨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액

지구명	단지명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 산술평균 총액(천원)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8단지	삼창 감정평가법인, 대한 감정평가법인	112,219,099
	14단지	삼창 감정평가법인, 대한 감정평가법인	94,032,881

15 견본주택 안내

- **건본주택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지 않으며, 사이버 건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건본주택 공개 시기 : 2020.06.02. 15시 이후**
- **사이버 건본주택은 전용면적별 일부 타입으로서 내부시설물은 분양 공고 시 제시된 내용(지구설계,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 외부 및 내부의 자재 및 형태)이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인허가 관청의 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시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되며, 단지 및 평면유형별로 색상과 형태가 다소 다를 수 있음.**

16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illegible]

17분양일정 안내

구분		일정	신청장소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		2020.06.02.(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국민일보, 한겨레	
건분주택 운영기간		—	· 2020.06.02.(화) 15시 이후 홈페이지에 사이버 건분주택 공개 (오프라인은 운영하지 않음)	
특별공급 청약접수	기관추천, 철거민	2020.06.15.(월) ~ 16.(화)	·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서비스(APP설치)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청약은 불가하며, 인터넷으로만 청약가능	인터넷청약 (08:00~17:30)
	다자녀 특별공급	2020.06.1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20.06.16.(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접수	제1순위	2020.06.19.(금)	—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서비스(APP설치)	인터넷청약 (08:00~17:30)
	제2순위	2020.06.22.(월)		
당첨자 및 동 · 호수배정 발표		2020.06.26.(금)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서비스(APP설치)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2020.06.30.(화) ~ 07.02.(목)	·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우편제출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게시		2020.08.31.(월)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계약기간		2020.09.14.(월) ~ 09.16.(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중도금 납부기한		2020.11.30.(월)		
입주자사전점검(예정)		2021.01.09.(토) ~ 2021.01.10.(일)		
입주개시(예정)		2021.02.15.(월) ~ 2021.04.16.(금)		

※ 상기 분양일정은 건축공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지정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600%에 달할 경우 2순위는 더 이상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단속강화 및 처벌규정

최근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국세청, 한국감정원,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결혼 등에 의한 불법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환수하는 등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청약통장을 사고 팔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례] 평소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부어왔던 A씨.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약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포기하던 차에 거리 전단지에 청약통장을 산다는 업자에게 전화해 웃돈을 받고 통장을 팔게 되는데...

☞ 청약통장 거래는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하고 10년 이내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원인무효로 인해 소유권이 환수되므로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하게 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도 될까요?

[사례]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계약을 맺은 A씨.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아 명의변경을 기다리는 동안 ‘프리미엄’이 올라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

☞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의 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는 주택법 6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며 주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한 처벌규정

○ (입주자 저촉증서 거래 · 알선 금지)청약통장의 거래,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 위반자에게는 1) 주택공급계약 취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제한

※ 근거 규정 :「주택법」제65조, 제10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주택 불법전매 금지)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거래, 알선에 대한 처벌규정

– 위반자에게는 1) 주택공급계약 취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규정 : 「주택법」제64조, 제101조

▣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사항은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 되고,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게되므로 거래 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